

■ 판례 동향

연속판매에서
과세가격 결정
판례 해설

■ 품목분류 동향

정빙기(整氷機)의
품목분류

■ 개정법령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스툼(storm) 몰아친다”
트럼프 2기로
韓 기업에 닥칠 통상 환경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CUSTRA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발행인 이종우

편집인 최흥식

총괄 나영주 lordme@kctdi.or.kr

편집기획 김선진 sunjin76@kctdi.or.kr

취재 하구현 sendme95@kctdi.or.kr

김성은 ray1023@kctdi.or.kr

디자인 이승훈 lsh0910@kctdi.or.kr

마케팅 손민기 smk0110@kctdi.or.kr

함동규 hdk0929@kctdi.or.kr

인쇄 경성문화사

배포 (주)아림디엠

발행처 한국관세무역개발원

발행일 2025년 1월 20일(통권 제2115호)

I S S N 2799-7251

등록번호 서울 다07117(2005.5.20.)

주소 서울시 강서구 마곡중앙5로 22 6층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지식사업실

홈페이지 www.custracom

S N S www.instagram.com/kctdi.official

본지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는 저작물로서 무단 복제 및 배포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협의 또는 허락에 의한 경우에도 출처를 반드시 명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C O N T E N T S

이주의 초점

- 04** “스톰(storm) 몰아친다” 트럼프 2기로 韓 기업에
닥칠 통상 환경

06 Weekly News**관세행정실무해설**

- 14** 관세행정안내
세트로 구성된 물품의 원산지 판정 방법
- 23** 질의응답사례
마시멜로우 스낵의 HS Code

판례동향

- 25** 관세판례해설
연속판매에서 과세가격 결정 판례 해설

품목분류동향

- 33** 품목분류해설
정빙기(整氷機)의 품목분류
- 45** 품목분류 M.A.P
삼투 탈수방식으로 보존처리한 망고 분류 사례
- 50** 세번 바로잡기
피니싱 세라믹
- 53** 상식 밖의 상품학
프랑스, 생수 대신 수돗물 권장

최신개정법령

- 56** 입법예고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중국 및 대만산 석유수지의 산업피해조사 공청회
개최

“스톡(storm) 몰아친다” 트럼프 2기로 韓 기업에 닥칠 통상 환경

무역협회, 올해 통상 키워드 ‘경제 안보, 관세, 공급과잉, 자원 무기화, 제조업’ 제시

보호무역주의 강화를 내걸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1월 20일 출범하는 가운데 올해 한국기업을 둘러싼 통상 환경이 험난한 풍파 내지는 거친 폭풍(storm)과 같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1월 13일 ‘2025년 글로벌 통상 환경 전망’ 보고서를 발간하며, 올 한 해 통상 환경을 좌우할 키워드로 ‘S.T.O.R.M.’을 선정했다. ▲경제 안보(Security & Survival), ▲관세(Tariff), ▲공급과잉(Oversupply), ▲신무기화한 자원(Resources), ▲제조업 부흥(Manufacturing Renaissance)의 영문 첫 글자를 딴 것이다.

우리의 통상 환경과 가장 밀접한 요인은 ‘관세’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보편관세, 상호관세, 對중국 고율 관세 등 조치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무역협회는 트럼프가 전 세계를 들쭉이게 했던 공약 ‘보편관세’의 경우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을 활용해 부과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다만 전 품목이 아닌, 특정 국가와 품목을 지정해 상대국의 관세를 인하하도록 유도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기존 철강·알루미늄 등에 관세를 부과한 무역확장법 제232조 및 통상법 제301조 대상 품목이 자동차와 구형 반도체로 확대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IEEPA는 무역확장법 제232조, 통상법 제301조에 비해 상대적으로 절차적 요건이 간소하고 대통령에게 포괄적 권한을 부여해 관세 부과 수단으로 활용성이 높다는 이유다.

법무법인 율촌 또한 1월 15일 ‘트럼프 2기 출범과 국내 산업 전망’을 통해 “보편관세와 관련해 공화당 내에서도 상대국이 보복 조치를 할 수 있고 미국 내 인플레이션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다”며, “보편관세의 법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IEEPA를 검토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결국 마약 등을 이유로 들며 제기한 관세 위협은 IEEPA 발동 요건을 염두에 뒀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트럼프는 1기 재임 당시에도 ‘국경 위기 대비를 위한 긴급조치’ 성명을 발표(2019. 5. 30.)하고 멕시코의 시정조치가 없으면 5% 관세를 시작으로 점진적으로 인상해 최대 25%까지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으나 관세 부과 예정 3일 전 합의(2019. 6. 7.)해 조치를 무기한 보류했다.

중국에는 통상법 제301조를 활용해 단기간 내 추가적인 관세 부과를 시도할 수 있다. 2019년 이래로 미국은 중국에 관세 부과, 수출통제 등 다양한 조치를 도입했고 이러한 제재는 2021년 취임한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이어진 바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는 전면적인 관세 부과를 위해 중국의 MFN(최혜국) 지위를 철회하거나 중국 기업의 제3국 생산 제품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할 가능성도 나온다. 국내법을 통해 수출국이 아닌 기업을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도 관세 우회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지만, 이는 의회 입법이 필요하다. 특히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은 미국의 對中 무역적자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만큼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무역확장법 제232조를 관세 부과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공급과잉 상태인 원재료 및 연관 제품은 특별시장상황(PMS) 조항을 활용해 반덤핑 관세 부과에 나설 수도 있다.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이 같은 관세 부과가 현실화되면 중국은 갈륨·게르마늄·흑연 등 핵심광물 수출 제한으로 맞대응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미국의 관세 조치는 자국 내 제조업 육성과도 연결된다. 바이든 행정부가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반도체 과학법(CHIPS)에 따른 보조금 지급으로 '당근' 정책을 편 것과 달리 트럼프 2기 행정부는 고율의 관세라는 '채찍'으로 제조업 공급망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외 기업들이 관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미국 투자를 늘리게끔 유도할 것이란 분석이다.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의 조성대 통상연구실장은 "결국 올해 많은 국가가 제조업 부흥을 놓고 경쟁할 것이다. 지정학적 리스크와 인센티브 옥석을 가리며 경영 전략을 마련해야 할 기업의 고민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경제 안보가 기업 생존과 직결될 것으로 전망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경제 안보를 이유로 반도체·배터리·인공지능 등 첨단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공격적인 수출통제를 했는데, 트럼프 2기 행정부는 경제 안보 대상을 보다 확장할 것이라고.

트럼프가 예고한 관세 위협이 현실화되면 한국의 對美 직접수출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이 중국, 멕시코, 베트남 등 제3국에 구축한 공급망이 타격을 입을 우려가 크다. 천연흑연처럼 전기차에 사용되는 핵심광물은 중국의 채굴·가공 비중이 높고 단기간 내 공급망 다변화가 어려워 관세 부과 시 미국에 투자한 우리 전기차·배터리 업체에 부담이 된다. 작년 12월 미국의 싱크탱크 브루킹스 연구소는 "멕시코, 캐나다 등 북미 3국의 자동차 공급망은 통합도가 높아 완성차 단계 전 수차례에 걸쳐 부품이 국경을 이동해 관세에 따른 비용 부담이 가중될 것"이란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트럼프발 관세 리스크가 타국에 비해 적을 수 있지만, 기업은 단순한 거래 비용 외에 투자, 공급망 변경 등 글로벌 경영 전략을 대대적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향후 이뤄질 미국의 관세 조치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별 기업의 관세 면제 절차 활용을 제안했다. 이는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우호적인 기업에 대해 개별 관세 면제 가능성이 컸던 점에서 착안한 것으로, 미국 제조 공급망과 고용 창출 등에 대한 한국 기업의 기여도를 적극적으로 설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율촌 또한 트럼프 2기에서도 마찬가지로 공화당을 지원하는 기업에 선별 대우를 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율촌은 무역수지 불균형을 이유로 韓·美 FTA 재협상 요구에 나설 가능성이 큰 점도 지적했다. "재협상으로 관세가 적용되면 무관세 적용을 받는 한국의 자동차 산업은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對美 후자규모를 줄이는 방안으로 미국산 가스 또는 석유구매 등 에너지 수입을 활용한 반대급부 제공을 고려할 수 있다"고 전했다.

조성대 통상연구실장은 "2025년 글로벌 통상 환경은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각국의 제조업 부흥을 위한 지원정책 경쟁으로 불확실성이 커질 것"이라며, "수출시장 다변화, 중국 대체 국가로서의 위상 제고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김성은 기자 |

관세청, 전자상거래 수입통관 체계 전면 개편

내년 11월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 구축 예정

관세청이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 구축 사업’ 수행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1월 14일 관세청은 정부대전청사에서 사업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이와 같이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기존 기업 간 무역거래(B2B)에 비해 다양한 공급망이 관여하는 전자상거래(B2C) 특성을 수입통관 체계에 반영해, 급증하는 전자상거래 통관 물량을 신속하면서도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해 추진됐다. 관세청은 지난 2024년 12월 삼성SDS 컨소시엄(삼성SDS, 케이씨넷)과 관련 계약을 체결, 내년 11월까지 약 2년간 해당 사업을 수행한다. 예산은 232억 원이다.



고광호 관세청장이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 플랫폼 구축 사업 착수보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출처 : 관세청)

이날 착수보고회에서 삼성SDS는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 구축 사업의 주요 사업 과제와 추진 내용 등을 발표하며,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인력, 탁월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신속하고 편리하면서도 안전한 전자상거래 통관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고광호 관세청장은 “전자상거래는 특정인의 소비가 아닌 일반적인 소비 패턴으로 자리매김해 이에 맞는 절차와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 김성은 기자 |

●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 플랫폼 구축 사업 주요 사업 내용 ●

1	전자상거래 전용 신고서 신설	기존 통관서식(수입신고서, 통관목록, 적재화물목록 등)에 전자상거래업체 신고 항목을 추가하고 불필요한 일부 항목을 삭제해 전자상거래 특성에 적합하게 개편
2	공급망 기반 위험관리 체계 구축	관세청과 전자상거래업체(사이버몰 등) 간 연계시스템 구축해 거래정보를 사전에 제출받아 업체별 차등화된 위험관리시스템 운영
3	본인인증 체계 도입	전자상거래물품 주문 시 새로운 본인인증 체계 및 검증을 도입해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우려 해소
4	전용 포털과 모바일 앱 개발	통관정보 조회, 민원상담, 세금조회·납부, 통계 제공 등 전자상거래 관련 원스톱 대민서비스 제공

출처 : 관세청

美 신규 첨단 AI 수출통제 조치 발표 ··· 韓 포함 동맹국은 면제

산업부, 美 국가안보차원 독자 조치로 우리 기업 영향 적으나 무기금수국에 본사 둔 기업은 주의 필요

미국이 첨단 인공지능(AI) 칩에 대한 수출통제 조치를 강화하고 우회수출을 차단하기 위한 수출관리규정을 개정한다. 또 AI 칩을 활용해 훈련된 첨단 AI 모델을 수출통제 대상 기술에 추가했다. 한국을 비롯한 핵심 동맹국은 이번 조치에서 제외됐다.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1월 13일(현지시간) 첨단 AI 칩 및 AI 모델에 대한 수출통제 조치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미국은 첨단 AI 칩에 대한 기존의 수출통제 조치를 강화하고 우회수출을 차단하기 위해 수출관리규정(EAR)을 개정했다. 개정안에는 전 세계 국가 중 한국을 포함한 핵심 동맹 파트너국 18개국은 이번 조치에서 면제돼 현재와 동일하게 AI 칩 수출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핵심 동맹국은 호주,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한국, 스페인, 스웨덴, 대만, 영국이다.

한편 미국이 지정한 무기금수국 22개국으로 미국 통제대상인 AI 칩을 수출하는 경우에도 현재와 동일하게 미국 상무부의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 신청 시 거부 추정 원칙으로 심사된다.

무기금수국에 포함된 22개 국가는 아프가니스탄, 벨라루스, 미얀마, 캄보디아,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중국(마카오 포함), 콩고민주공화국, 쿠바, 에리트레아, 아이티, 이란, 이라크, 북한, 레바논, 리비아, 니카라과, 러시아, 소말리아, 남수단, 시리아, 베네수엘라, 짐바브웨다.

무기금수국을 제외한 국가로 미국 통제대상인 AI 칩을 수출할 경우 미국 상무부의 허가가 필요하며, 일정량까지는 허가 추정 원칙으로 심사될 예정이다. 다만, AI 칩의 제조·개발 등을 위한 수출, 데이터센터용이 아닌 게이밍 칩의 수출 등은 허가 예외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데이터센터용 검증된 최종사용자(VEU, Validated End User) 제도를 개정해 한국을 포함한 18개국 기업과 기관에 대해서는 미국 상무부 VEU 승인을 획득할 경우 전 세계에 추가적인 수출허가 없이 데이터센터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미국은 AI 칩을 활용해 훈련된 첨단 AI 모델을 수출통제 대상 기술에 추가했다. 한국을 포함한 핵심 동맹 및 파트너 18개국으로의 기술 수출은 이번 조치에서 면제되며, 일반에 공개된 모델 및 가장 첨단인 공개된 모델보다 성능이 낮은 비공개 모델은 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산업부는 “미국이 국가안보적 관점에서 독자적으로 시행하는 조치로, 기본적으로 한국이 면제 국가에 포함된 만큼 미국으로부터 첨단 AI 칩·모델을 수입하는 데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며, “다만, 한국에 소재한 기업·기관·개인이더라도 미국이 지정한 무기금수국에 본사를 두고 있을 경우 허가가 면제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하구현기자 |

수산물 수입검역 신청 시 적하목록 종이 서류 제출 생략

앞으로 수산물 수입검역을 신청할 경우 민원인이 적하목록 종이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게 됐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1월 13일부터 민원인이 수산물 수입검역을 신청할 때 적하목록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행정서비스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수산물 수입검역은 해외에서 수입된 수산물이 국내에 유입되기 전 질병, 유해물질, 불법 어획 등의 문제점을 사전에 차단하고 국내 수산업 보호를 위해 실시하는 필수 절차로 수입검역을 신청할 때는 이식승인서, 적하목록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작년 6월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개정으로 관세청에 신고되는 화물 정보를 수품원이 직접 전산상으로 공유받을 수 있게 되면서 민원인이 수입검역 신청 시 별도로 적하목록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게 됐다. 따라서 1월 13일부터는 민원인이 수입검역을 신청할 때 적하목록 종이 서류 제출 대신 관세청 통관단일 창구(Unipass)에서 화물관리번호만 입력하면 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서류 간소화 서비스 시행으로 적하목록 발급을 위해 선사 등에 방문해야 했던 민원인의 번거로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작년 무역기술장벽 4,337건, 2023년 이어 최고치 경신

2024년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통보한 기술규제 건수가 2023년에 이어 다시 최고치를 경신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작년 무역기술장벽(TBT) 협정에 WTO에 통보한 기술규제가 누적 4,337건을 기록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밝혔다. 이는 직전 최고치였던 2023년 대비 약 6% 증가한 수치다.

각국의 기술규제 통보 건수는 증가하는 추세로 특히 작년의 경우 아프리카 등 개발도상국의 통보 비중이 늘어나며 80% 이상을 차지했다. 국가별로는 우간다(426건), 미국(419건), 탄자니아(326건) 순으로 상위를 차지했다. 분야별로는 식·의약품 분야(21.8%), 농·수산물 분야(21.2%), 화학·세라믹 분야(15.9%) 순으로 많은 기술규제가 통보됐다.

특히 우리나라 수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10대 수출국 및 5대 신흥국을 일컫는 15대 중점국은 1,150건을 통보해 2023년 대비 5% 증가했다. 미국은 에너지 효율 규제, 교통안전 관련 규제를 신설·강화하는 등 15대 중점국 중 여전히 1위를 차지했고,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은 국가표준 및 강제인증(CCC) 등을 제·개정하는 등 2023년 대비 3배 가까이 증가한 191건을 통보하며 그 뒤를 이었다. 베트남은 자동차 관련 규제 등 66건을 통보해 2023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15대 중점국이 주로 통보한 분야는 화학·세라믹 분야(17.5%), 식·의약품 분야(15.7%), 전기전자 분야(15.1%)로 그중 미국, EU 등에서 통보한 화학물질 관련 규제가 가장 많았다.

| 하구현 기자 |

중·러産 부품·SW 탑재 커넥티드카 미국 내 판매·수입 금지된다

정부, 美 커넥티드카 최종 규정 발표에 우리 업계 부담은 적을 것으로 평가

오는 2027년 모델부터 중국 또는 러시아 관련 기업 등에서 설계·개발·제조·공급하는 커넥티드카 부품과 소프트웨어(SW) 등이 탑재된 자동차의 미국 내 판매와 수입이 금지된다.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 Bureau of Industry and Security)은 1월 14일(현지시간) 중국과 러시아의 커넥티드카로 인해 발생하는 국가안보 위협으로부터 미국을 보호하기 위해 커넥티드카 최종 규칙을 발표했다.

커넥티드카는 정보통신기술과 자동차를 연결시키는 것으로 양방향 인터넷, 모바일 서비스 등이 가능한 차량으로 다른 차량이나 교통 및 통신인프라, 보행자 단말 등과 실시간으로 통신하며 운전자의 편의와 교통안전을 돕고 인터넷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량이다.

美 상무부의 이번 최종 규칙의 주요 골자는 중국 또는 러시아 관련 기업 등에서 설계·개발·제조·공급하는 커넥티드카 부품과 SW 등이 탑재된 자동차를 미국 내에서 판매를 금지하는 것이다.

규제 대상 커넥티드 기술은 셀룰러 통신 등을 활용해 차량을 외부와 연결하는 차량연결시스템(VCS, Vehicle Connectivity System)과 운전자가 운전하지 않고 차량이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자율주행시스템(ADS, Automated Driving System)이다.

규제 적용 시기는 SW의 경우 2027년 모델부터, 하드웨어는 2023년 모델부터 적용된다.

최종 규정에 따라 미국 내 차량 판매를 위해서는 제작사(OEM) 등은 모델별로 BIS에 ‘적합성 신고(Declaration of Conformity)’를 해야 하고, 매년 해당 신고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신고를 위해 차량제조사 등은 소프트웨어자재증명서(SBOM, Software Bill of Materials)를 BIS에 제출할 필요는 없지만 10년 동안 SBOM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정부는 美 상무부의 이번 최종 규칙 발표에 대해 우리 업계는 부담이 적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산업부는 “美 정부가 커넥티드카 규칙 제정을 사전 통지한 작년 초부터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수렴된 의견을 2차례에 걸쳐 美 상무부에 제출하고 긴밀히 협의해 왔다”며, “그 결과 규제범위 축소, 정의 명확화, SBOM 제출의무 완화 등 우리 정부가 제출한 의견이 대부분 반영돼 업계 부담이 상당 부분 해소된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해당 규정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규제대상 부품 공급망 다변화, SBOM 체계 구축 등 지원, 美 측과 최종 규정 이행을 위한 협력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하구현 기자 |

해외 직구로 싸게 산 슬리퍼, 위조상품이었다고?

특허청, 해외 직구 플랫폼서 A사 슬리퍼 샘플 구매 결과 100% 위조상품 확인

특허청이 해외 직구 플랫폼사에서 유통되는 위조상품 실태 파악을 위해 유명 A사 상표 제품에 대한 ‘위조상품 샘플 구매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구매상품 100%가 위조상품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은 1월 13일 중국 해외 직구 플랫폼사에서 위조상품으로 의심되는 A사 슬리퍼와 샌들을 직접 샘플 구매해 상표권 침해 여부를 확인한 결과 모두 위조상품으로 판별됐다고 밝혔다.

샘플 구매는 정사가 대비 40% 이하의 상품을 중심으로 의심군 16곳을 선정해 직접 구매하는 형식으로 실시됐다.

특허청에 따르면, 모니터링 결과 온라인 위조상품의 경우 ‘짜퉁, S급, st’ 등과 같이 위조상품을 지칭하는 용어가 주로 사용됐으나, 이번에 적발된 위조상품들은 이 같은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정품의 로고, 이미지를 사용해 판매 페이지만으로는 위조상품 여부를 확인하기 쉽지 않았다.

‘A사 공식스토어’라는 명칭을 단 판매처 역시 공식스토어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고, 판매처에서 판매되는 제품까지도 위조상품으로 판명돼 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정품과 위조상품은 소재, 형태, 마감상태 등 품질에서 차이가 있겠지만 정품을 같이 구매해 비교하지 않는 한 소비자가 판단하기 어렵다. 하지만 판매가가 정사가 대비 40% 이하인 제품은 위조상품일 가능성이 높아 일단 주의가 필요하다고 특허청은 설명했다.

위조상품으로 의심될 경우 객관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제품 로고를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와 비교해 보는 것이다.

등록 상표는 특허청의 ‘키프리스 특허정보검색서비스(www.kipi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허청은 소비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해당 플랫폼사에 위조상품 판매처로 확인된 곳에 대한 조치를 요청하는 한편, 향후 모니터링 대상 품목 및 플랫폼을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올해부터는 인공지능(AI) 모니터링도 전격 도입하는 만큼 위조상품 차단 효과가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위조상품으로 의심되는 경우 소비자는 판매자에게 연락해 반품 요청 및 환불 처리를 할 수 있고, 판매자가 가품임을 인정하지 않고 반품을 거절할 경우 구매한 플랫폼의 고객센터 또는 특허청의 ‘지식재산침해 원스톱 신고 상담센터(1666-6464, www.koipa.re.kr/ippolice)’로 신고할 수 있다.

| 하구현 기자 |

1월부터 항공기 내리는 즉시 마약 단속 “우범 항공편 대상”

관세청은 올해 1월부터 우범 항공편 탑승객을 대상으로 법무부 입국심사 전에 항공기에서 내리는 즉시 세관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1월 15일 관세청은 “작년 9월 말 기준 마약밀수 적발 건수의 23%를 차지할 만큼 여행자가 마약밀수의 주요 통로로 악용되고 있어 마약으로부터 국민 보건과 사회 안전을 지키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기존 입국장 내에서 검사하는 방식은 여러 항공편에서 내린 여행객 때문에 혼잡해진 상황을 틈타 마약 전달책을 바꿔치기하는 등 세관의 감시를 회피하기 위한 행위를 효율적으로 차단하는 데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올해 1월부터 인천국제공항으로 들어오는 항공기 중 선별된 특정 우범 항공편을 대상으로 항공기에서 내리는 즉시 탑승객 전원의 마약·총기류 등 위해물품 반입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사하는 방식을 도입한다.

아울러 관세청은 우범여행자의 선별정보와 기탁수하물(화물운송)의 X-Ray 관독영상을 한 화면에 보여주는 ‘동시구현시스템’을 X-Ray 검색라인에 구축해 마약 등 위해물품 영상관독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입국장 내에 마약전용 검사실을 마련하고 파괴검사 안전장비(Glove-Box)를 이용해 휴대품을 검사하기로 했다.

관세청, ‘장부 허위 작성’ 불법 환전업체 29개사 적발

환전 장부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한도를 초과해 매입하는 등 불법행위를 해 온 환전업체가 무더기로 관세청에 적발됐다. 관세청은 고위험 환전업체 41개사를 대상으로 작년 10월 10일부터 12월 20일까지 10주간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29개 환전업체를 적발, 업무정지·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1월 14일 밝혔다.

관세청은 시흥·안산·대림 등 외국인 밀집 지역에 소재하거나 사전정보 분석으로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된 고위험 환전업체 41개사를 선별했는데, 이번에는 온라인 및 무인 환전업체 규모가 최근 급격히 성장하는 점을 고려해 8개사를 점검 대상에 포함했다.

위반업체는 ▲거래 당사자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환전실적이 있는데도 없다고 신고하는 등 환전 장부를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작성(8개사), ▲폐업했는데도 폐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17개사)가 많았다. 또 온라인 환전업체는 ▲이행보증금을 과소하게 설정(3개사)하거나 ▲동일자, 동일인 기준 미화 4,000달러의 매입 한도를 초과해서 매입(2개사)한 사례도 있었다. 적발된 업체 중 시중 대면 환전업체가 23개사였으며, 온라인·무인 환전업체가 6개사였다. 적발된 업체 대표자의 국적은 중국인 9명, 러시아 1명으로 34%(10개사)가 외국인이 운영하고 있었다.

관세청 관계자는 “환전소가 외국인 관광객의 환전 편의 증진이라는 제도 취지에서 벗어나 환치기 등 불법 송금이나 보이스포싱 범죄 수익금 같은 불법자금의 세탁 통로로 악용되는 사례가 적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 김성은 기자 |

2024년 동물 의약품 불법 온라인 거래 차단 건수 1,368건

최근 동물용 의약품 불법 온라인 거래가 2021년(52건)에서 2024년 1,368건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이와 같은 결과를 발표하며, 동물용 의약품 불법 온라인 거래를 근절하기 위한 홍보캠페인을 이달부터 추진한다고 1월 7일 밝혔다.

동물용 의약품 온라인 판매는 불법으로, 동물병원·동물약국 등 지정된 장소에서만 전문가가 판매할 수 있다. 위반 시 「약사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검역본부에 따르면, 특히 해외 직구 플랫폼을 통한 동물용 의약품은 대부분 국내 허가되지 않은 것으로 안전성과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고 위조품일 가능성도 있다. 또 적절한 진료·처방 없이 잘못 사용할 경우 반려동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2024년 9월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해외 직구 플랫폼 3곳에서 판매한 샴푸, 물티슈 등 반려동물용품 20개 제품에서 유해물질과 유해 미생물이 검출됐다.

검역본부는 이와 관련해 단속 및 제재를 하는 한편, 동물용 의약품은 반드시 동물병원, 동물약국 등 지정된 장소에서 구매해야 한다는 점 등을 알리는 카드뉴스와 포스터를 온라인 판매 플랫폼과 동물병원에 게시했다. 아울러 홍보 영상을 관계 기관과 단체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등 홍보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설 명절 대비 수입 돼지·쇠고기 이력 집중 관리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축산물 수요가 증가하는 설 명절을 앞두고 1월 8일부터 27일까지 약 3주간 수입 쇠고기와 돼지고기에 대한 수입 이력관리 집중단속에 나섰다.

이번 특별단속 대상은 전국의 수입 쇠고기·돼지고기를 취급하는 정육점 등 축산물위생영업장, 조리·판매하는 식당 등 식품위생영업장 및 온라인으로 축산물을 판매하는 통신판매영업장 등이다. 특히 최근 온라인을 통한 축산물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인터넷 쇼핑물 등을 통해 수입 쇠고기·돼지고기를 판매하는 통신판매영업장과 이력제 위반이 의심되는 축산물위생영업장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수입 쇠고기·돼지고기 취급 업체의 거래 내역 기록·관리, 이력번호 표시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위반 사항 적발 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법」에 따라 최대 500만원의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소비자는 수입 쇠고기·돼지고기와 관련해 수입축산물이력관리시스템(www.meatwatch.go.kr)에서 제품의 원산지 정보, 수입 이력, 유통경로 등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2회 이상 상습 위반업체는 공표하고 있어 수입축산물이력관리시스템에서 볼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해당 시스템 또는 콜센터(1688-0026)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 김성은 기자 |

조기·고사리 등 수입물품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관세청은 제수용·선물용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집중단속을 1월 13일부터 24일까지 실시한다.

주요 단속 품목은 조기·고사리·호두 등 농·수·축산물, 제기·교자상·병풍 등 제수용품, 건강식품·다과세트 등 선물용품이며, 수입·유통업체와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 등 도소매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 단속을 진행할 계획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행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소비자에게 오인을 일으키는 표시 행위, 원산지를 손상·변경한 행위 등이 단속 대상이다. 원산지표시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시정조치 명령을 하고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손상·변경한 행위 등 중대한 위반 사항이 있으면 관련 법에 따라 고발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한다.

이번에는 전국 세관뿐만 아니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및 각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합동 단속도 진행한다.

무역협회, RCEP 활용 실무 가이드북 펴내

한국무역협회 FTA·통상 종합지원센터는 우리나라 수출기업을 위한 ‘리얼 RCEP 활용 실무 가이드북’을 발간했다고 1월 13일 밝혔다.

가이드북에는 발효 4년 차를 맞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핵심 내용과 활용 전략, 실무 중심의 협정 활용 사례 등이 자세히 소개됐다. 2023년 기준 우리나라와 RCEP 국가 간 교역 규모는 5,867억 달러로 우리나라 전체 교역의 약 46%를 차지한다.

무역협회 차이나테스크 이강일 실장은 “RCEP은 발효 연차가 커질수록 관세 실익 및 비용 절감이 증대되는 구조로 기체결된 FTA를 보완·대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가이드북은 FTA 통합플랫폼(okfta.kita.net)에서 이북(E-Book) 형태로 열람할 수 있다.

KCTDI 연구본부, ‘관세무역연구’ 통권 제4호 발간

한국관세무역개발원(KCTDI) 연구본부는 학술지 ‘관세무역연구’ 제4호를 발간했다.

‘관세무역연구’는 관세행정 및 무역 정책 수립·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연구 활동을 장려하고, 관세·무역의 학술 활동 진흥을 도모하고자 계간으로 발간되는 학술지다. 통권 제4호에는 ‘미국발 보편관세 적용의 경제적 파급영향 분석’, ‘미국의 시대별 무역 규제와 대응방안’,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 배경과 이행 쟁점 분석’ 등 총 5편의 논문이 포함됐다.

KCTDI 신대철 연구2실장은 이번 학술지를 발간하며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보편적 관세정책과 특정국 추가 관세 전략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한 내용과 EU CBAM 도입 배경과 전환기간 동안의 주요 쟁점을 분석하고 한국의 대응 방안을 제시하는 논문 등 최근 이슈 사안을 중심으로 이번 호를 구성했다”며, “무료로 배부되는 학술지인 만큼 언제든지 부담 없이 구독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구독 신청은 KCTDI 연구2실(02-3416-5167)로 연락하면 된다.

세트로 구성된 물품의 원산지 판정 방법

홍 재 상 | 예술사랑관세사무소 관세사

1. 질문 & 답변

협정명	한·미 FTA
질문	메모리폼 베개를 수입하는데, 메모리폼은 미국에서 생산됐고 베개커버는 중국산인 경우 메모리폼 베개가 미국 원산지 제품으로 인정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답변	베개 세트가 섬유 또는 의류의 소매용 세트를 이루는 경우에 중국산 커버의 가격이 전체 베개 세트 관세가격의 10%를 초과하지 않으면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 가능합니다(단, 베개 세트의 섬유 또는 의류의 소매용 세트 해당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2. 원산지규정과 특례기준

(1) 개요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절차는 수출물품의 원산지 판정을 진행하는 것이다. 물론 FTA 적용 요건은 1. 거래당사자 요건, 2. 품목 요건, 3. 원산지 상품 요건, 4. 절차 요건, 5. 운송 요건(직접운송원칙)이 있지만, 실무상 가장 중요한 것은 3. 원산지 상품 요건이라고 볼 수 있다.

협정상 원산지를 판정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FTA 실무에서 원산지 상품 요건에 관한 부분은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PSR, Product Specific Rules)을 충족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경우가 많다. 다만 실제로는 모든 품목에 적용되는 일반기준(General Rules)을 당연히 충족해야 한다. 일반기준은 여러 품목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총칙규정으로서 협정 체계상 '원산지규정'의 본문으로 규정되며,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은 해당 품목에 한정해 적용되는 각칙으로서 '별표'로 규정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일반기준은 공통기준과 특례기준으로 나뉘는데, 공통기준은 FTA에 관한 원산지 판정을 위해 충족해야 하는 기준이다. 그에 반해 특례기준은 대부분 협정별로 각 원산지 결정기준에 대한 원산지 판정이 용이하도록 만들 수 있는 기준을 말한다. 불완전생산물품의 원산지 결정 시 적용되는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등이 지닌 한계 또는 모순을 보완하거나 상호 간 무역 촉진을 위해 대부분 FTA 원산지규정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특례기준을 두고 있다.

(2) 세트물품 특례규정

원산지 결정기준의 특례규정상 세트물품은 서로 다른 성질의 물품을 특정 목적을 위해 하나로 조합한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라면은 ‘면’뿐만 아니라 분말 스프나 건더기 스프가 함께 조합돼 있다. 라면의 주된 특성은 면 자체에 있겠지만, 완전한 라면을 만들기 위해서는 스프가 꼭 필요할 것이다. 세트물품은 일반적으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 따라 하나의 HS Code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다.

HS Code를 분류하기 위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은 제1호부터 제6호까지 구성돼 있는데, 제1호부터 제4호까지는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제1호 및 제2호에도 분류하지 못하는 경우 통칙 제3호에 따라 HS Code를 결정할 수 있다. 통칙 제3호는 동일한 물품이 둘 이상의 호로 분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품목분류에 관해 규정하고 있고 그 중 나목에서는 ‘세트물품’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세트물품의 경우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뤄진 물품으로 봐 분류되는 것이고, 앞서 예시로 든 라면의 경우 본질적인 특성을 가진 라면으로 HS Code가 확정될 것이다.

협정별 세트물품 규정의 존재 여부는 상이하다. 실제로 각 협정에서는 세트에 대한 원산지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 협정도 있고 그렇지 않은 협정도 있다.

한·ASEAN, 인도, 뉴질랜드, 캄보디아 FTA 등은 세트규정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데 이 경우 세트물품의 원산지 판정 방법에 관한 문의가 생길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다음 사례를 참고할 수 있다.

질문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의 규정에 의해 ‘소매용 세트물품’으로 분류된 상품의 경우 원산지 결정기준은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가?
답변	<p>1. 협정문에 세트물품 규정이 없는 경우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의 규정에 의해 분류된 세트물품 HS Code에 대한 원산지 결정기준을 적용해 원산지 충족 여부를 판단</p> <p>2. 협정문에 세트물품 규정이 있는 경우 세트 구성품 각각의 세번에 해당되는 원산지 결정기준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며, 다만, 특정 구성품이 비원산지 물품으로 판정됐더라도 이 구성품의 가격이 총 세트물품 가격의 일정수준 이하라면 예외적으로 그 세트물품 전체를 원산지 물품으로 간주</p>

세트 규정이 존재하는 협정별로 관련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특히 최근 발효된 한·필리핀 FTA의 경우 세트규정이 도입돼 주목할 만하다.

구분	EFTA, EU, 튀르키예, 캐나다, 영국, 이스라엘	미국		페루, 중국, 중미	콜롬비아	필리핀
		일반품목	섬유류			
세트물품 예외 인정 여부	○	○		○	○	○
비원산지 물품 허용 한도	공장도 가격의 15% 이하	조정가치의 15% 이하	관세가치의 10% 이하	FOB 가격의 15% 이하	조정가치의 15% 이하	FOB 가격의 10% 이하

(3) 세트물품의 품목분류

세트물품의 품목분류는 FTA뿐 아니라 HS Code 분류 자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HS Code로 분류될 수 있는 세트물품은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를 적용하지 않고, 통칙 제3호 나목에 따라 품목분류를 진행할 것이다. 물론 통칙 제1호에 따라 분류되는 세트물품이 존재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따로 논하지 않겠다.

■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

통칙 제3호 나목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물품이 통칙에서 정하는 ‘세트’에 해당되어야 하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뤄진 물품이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다.

먼저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이란 다음 요건을 갖춘 물품을 의미한다.

- 가. 일견(prima facie) 서로 다른 호에 분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최소한 둘 이상의 서로 다른 물품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따라서, 예를 들면, 6개의 폰듀 포크(fondue forks)는 이 통칙에서 의미하는 세트로 간주할 수 없다.
- 나. 어떤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나 어떤 특정의 활동을 행하기 위해 함께 조합한 제품이나 물품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 다. 재포장 없이 최종 사용자에게 직접 판매하는데 적합한 방법으로 조합한 것(예 : 상자나 케이스 속이나 판 위에 등)

가목에서 다목까지의 해석에 관해 우리나라에서 구체적인 해석 방향에 대한 지침이 따로 존재하지는 않는다. 다만 중요한 것은 ① 서로 다른 호로 분류될 수 있는 둘 이상의 물품으로 구성된 것, ② 어떤 요구를 충족하거나 특정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함께 조합된 물품, ③ 재포장 없이 소매판매가 가능하도록 조합한 물품에 대한 요건은 각각 판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미국의 ‘Classification of Sets(2004)’와 EU의 ‘EU Guidelines on the classification in the Combined Nomenclature of goods put up in sets for retail sale(2013)’ 소매용 세트 등에 대한 추가적인 판단 기준이 존재한다.

먼저 ① 서로 다른 호로 분류될 수 있는 둘 이상의 물품으로 구성된 것이라는 요건에 대해 EU Guidelines에서는 ‘서로 다른 호’라고 표현된 해설상 내용을 추가 설명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통칙 제3호 나목의 경우 4단위 HS Code인 ‘호’를 결정하기 위한 해설이 있지만, 통칙 제6호에 따르면 소호의 품목분류 결정에 있어 통칙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모든 통칙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기 때문에 ② 동일한 호에 있지만 다른 소호에 분류될 수 있는 둘 이상의 서로 다른 물품은 통칙 제3호 나목의 의미 하에서의 세트라고 간주될 수 있다고 본다.

두 번째로 어떤 요구를 충족하거나 특정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함께 조합된 물품에 관한 요건은 사실상 소매용 세트임을 판단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하고 판단하기 어려운 요건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를 나누면 ① 어떤 요구를 충족하거나(to meet a particular need), ② 특정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carry out a specific activity), ③ 함께 조합된 제품이나 물품으로 구성되어야(consist of products or articles put up together) 한다는 것이다.

EU Guidelines에서는 ‘어떤 요구(particular need)’라는 용어는 특정(particular)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물품이 순서대로(sequence) 또는 무작위로(randomly) 사용되는 것을 뜻하고, ‘특정 활동(specific activity)’이라는 용어는 한정적·특정한 상황에서 수행되는 작업(an action performed at a certain/specific occasion)으로 설명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Classification of Sets’에서는 HQ 953472를 언급하며, “어떤 요구 및 특정 활동이라는 요건을 충족해 해당 물품이 세트로 간주되려면 단일 목적 또는 활동(single purpose or activity)을 위해 함께 또는 서로 연계(결합)해 사용하도록 명확하게 의도(clearly intended for use together or in conjunction)될 정도로 관련성(related)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세 번째로 재포장 없이 소매판매가 가능하도록 조합한 물품에 관한 요건에 대해 EU Guidelines에서는 ‘세트’의 모든 품목이 동시에 동일한 신고서에 기재되어야 하고, 모든 품목이 휴대용 케이스, 비닐봉지, 상자, 그물망 또는 (포장 여부와 관계없이) 강화된 필라멘트 테이프(filament reinforced tape) 등을 사용해 함께 묶인 동일한 패키지로 제공되어야 하며, 모든 품목이 재포장 없이 이용자에게 직접 판매하기에 적합한 방식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다만, 소매용 세트가 재포장 없이 이용자에게 직접 판매하기에 적합하다는 전제하에 상품의 구성(예 : 크기, 무게, 모양, 화학 성분), 운송 또는 안전상의 이유로 정당화되는 경우 별도의 포장으로 제시될 수 있다고도 설명하고 있다.

또한 해당 물품이 세트로 인정된 뒤에는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가 존재해

야 하는데, 이에 대해 해설에서는 본질적인 특성을 결정하는 요소는 물품의 서로 다른 종류에 따라 달라지고(즉, 사안에 따라 다르고), 그 재료나 구성요소의 성질(nature of the material or component), 그 용적(bulk), 수량(quantity), 중량(weight)이나 가격(value)에 의해 결정되거나 그 물품을 사용할 때의 그 구성 재료의 역할(the role of a constituent material in relation to the use of the goods)에 따라서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캐나다에서는 ‘본질적인(essential)’이 되려면 특성이 어떤 것의 본질과 관련돼 있어야 하며 이는 곧 근본적(fundamental)이어야 한다고 보고, ‘본질적인 특성(essential character)’은 구별되는 특성 또는 속성으로, 해당 물품의 존재에 대한 중심적인 이유라고 봤다.

또한 미국에서는 본질적인 특성에 대해 물품의 특성이란 그것이 무엇인지를 강하게 표시하거나 구별하는 역할을 하는 속성을 말하고, 본질적 특성이란 “물품의 구조, 핵심 또는 상태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것, 즉 필수불가결한 속성(즉, 그것이 무엇인지)”을 의미한다고 봤다.

본질적인 특성을 판단하는 기준에는 재료나 구성요소의 성질이나 수량, 중량 등이 존재하는데, 본질적인 특성을 결정함에 있어서 어떤 기준을 먼저 적용할 수 있을 것인지는 제시되는 물품의 특성에 따라 결정돼야 할 것이다.

3. 질문 & 답변 사례 및 관련 사항 해석

해당 질문 & 답변 사례는 메모리폼 베개를 수입하는데, 메모리폼은 미국에서 생산됐고 베개커버는 중국산인 경우 메모리폼 베개가 미국 원산지 제품으로 인정 가능한지에 관한 문의다.

이에 대한 판단은 총 4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1차 판단은 해당 메모리폼 베개 & 베개커버가 통칙 제3호 나목을 충족하는 ‘소매용 세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이다.

2차 판단은 대상 물품의 구성을 확인한 후에 세트 물품을 구성하고 있는 제품의 원산지를 파악해 비원산지(비역내산) 물품의 구성 비율을 파악해야 할 것이다. 만약 모두 원산지 상품으로 이뤄진 세트물품이라면 협정상 세트규정이 있든 없든 해당 세트는 무조건 원산지 상품이 될 것이다. 다만, 비원산지 상품이 일부 구성돼 있다면 세트 관련 규정을 확인할 실익이 생기는 것이다.

3차 판단은 활용 협정에 세트와 관련된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야 할 것이다.

4차 판단은 협정상 세트규정이 있는 경우 관련 규정을 충족했는지를 확인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대상 물품이 원산지 상품으로만 구성된 것이 아니라 비원산지 상품과 조합돼 있는 것이 확인됐다면 비역내산 물품의 원가를 계산해 각 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역내산 판정 비율을 확인해야 하는 것이다.

통칙 제3호 나목을 충족하는 ‘소매용 세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부분에서는 현재 문의한 물품(메모리폼 베개 및 베개커버)의 HS Code 정보가 제시되지는 않았지만, 각각 제9404호(메모리폼 베개) 및 제6302호(베개커버)에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해당 물품의 HS Code가 통칙 제3호 나목의 규정을 충족하게 된다면 본질적인 특성에 따라 제9404호에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 FTA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은 달라질 수 있다.

협정	예상 세번	원산지 결정기준
	제9404.90호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007호, 제5111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8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9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12호부터 제5516호까지 및 제6307.90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한·미 FTA	제6302.10호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3.33호부터 제5403.39호까지, 제5403.42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제5801호부터 제5802호까지 및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계약당사국에서 재단[또는 편성(knit to shape)]이 이루어지고, 봉제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결합 공정이 수행된 것으로 한정한다.

만약 세트규정을 충족한다면 제9404.90호의 원산지 결정기준을 고려하면 될 것이다. 그렇지만 만약 세트규정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각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 제6302.10호에 존재하는 베개커버는 중국산이기 때문에 한·미 FTA 적용 대상이 아니며, 베개커버를 제외한 메모리폼 베개(제9404.90호)에 대해서만 원산지 판정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활용 협정에 세트와 관련된 규정이 있는지 확인하는 부분에서는 한·미 FTA 목적상 소매용 세트 규정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한·중, 한·EU, 한·미 FTA 등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조항	규정
한·중 FTA	<p>제3.11조(세트)</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의 일반해석규칙의 규칙3에 정의된 세트는 세트의 모든 구성품이 원산지 상품인 경우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된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트가 원산지 및 비원산지 상품으로 구성되는 경우, 제3.5조에 따라 결정되는 비원산지 상품의 가치가 그 세트의 본선인도가격의 1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그 세트는 전체가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된다.
한·EU FTA	<p>제9조(세트상품)</p> <p>HS 통칙 3에 정의된 대로, 세트는 모든 구성 제품이 원산지 제품이고 세트와 그 제품 모두 이 의정서의 다른 모든 적용 가능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원산지 제품으로 간주된다.</p> <p>그럼에도 불구하고 세트가 원산지 및 비원산지 제품으로 구성되는 경우, 비원산지 제품의 가치가 그 세트의 공장도 가격의 1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세트는 전체가 원산지 제품으로 간주된다.</p>
한·미 FTA	<p>제6.9조(상품의 세트)</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각 당사국은 상품이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의 일반해석 규칙의 규칙3을 적용한 결과로 세트로 분류되는 경우, 세트 내의 각 상품이 원산지 상품인 경우에만 그 세트가 원산지 상품이 되도록 규정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트의 모든 비원산지 상품의 가치가 그 세트의 조정가치의 1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상품의 세트는 원산지 상품이다.
한·미 FTA	<p>제4.2조(원산지 규정 및 관련 사안) 세트의 취급</p> <ol style="list-style-type: none"> 8. 부속서 4-가에 규정된 품목별 원산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의 일반해석규칙 3에 따라 소매용 세트를 구성하는 상품으로 분류될 수 있는 섬유 또는 의류 상품은, 그 세트 내 각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거나 세트 내 비원산지 상품의 총 가치가 세트의 관세가격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한·미 FTA의 경우 제6장(원산지)의 일반품목과 제4장의 섬유 및 의류에 대한 장(Chapter)이 나뉘어 있으며, 제4장의 적용 대상인 물품의 경우 제4.2조(원산지 규정 및 관련 사안)의 적용을 받는다. 이번 질의 & 답변 사례에서 예상되는 HS Code인 제9404.90호 및 제6302.10호는 제4장의 적용 대상이 된다.

제4장과 제6장은 세트물품에 대한 허용 기준이 상이하다. 제6장의 규정이 적용되면 조정가치의 15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상품의 세트는 원산지 상품이 되지만, 제4장의 적용 대상이면 관세가격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즉, 한·미 FTA와 같이 물품에 대한 원산지기준이 다른 장에 규정된 경우 어떤 장을 통해 관련 규정을 해석해야 하는지 확인이 필요한 것이다.

관세청 답변에서는 중국산 베개커버의 가격이 전체 베개세트 관세가격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 가능하다고 언급한 것으로 봐 해당 물품이 제4장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은 명확해 보인다.

각각의 독립된 HS Code를 가진 물품이 합쳐져서 세트가 되고 가장 본질적 특성이 있는 물품의 HS Code로 분류된다면, 다른 기타 물품들은 자연히 완제품의 HS Code와 다른 HS Code를 가진 상태로 원재료 내역에 구성될 것이다. 통칙 규정에 따른 세트의 구성요건이 서로 다른 호에 분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최소한 둘 이상의 서로 다른 물품으로 구성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세번변경기준은 비원산지 원재료의 HS Code와 완제품의 HS Code가 달라지는 경우 해당 HS Code의 변경을 수행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겠다는 내용인데, 여러 가지 물품이 세트화됐다는 사유만으로 HS Code가 변경됐다고 판단하고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해 원산지 충족이라는 판정이 이뤄져 기존 FTA에서 보고 있는 원산지와 지향하는 바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세트규정이 존재하는 경우 해당 규정을 정확히 확인하고 충족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세트물품에 대한 규정은 각 FTA 규정만 활용한 것이 아닌 통칙 제3호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특이한 규정이다. 따라서 일단 해당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통칙 제3호에 해당하는 물품이어야 한다. 다만 일부 품목은 통칙 제1호에 따라 주 규정 또는 호의 용어에 의한 세트 규정이 적용되는 사례가 있어 해당 물품은 FTA 목적상 세트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통칙 제1호에 따른 세트 규정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관련 주 또는 호	규정 또는 호의 용어
제6308호	러그(rug)용·태피스트리(tapestry)용·자수한 테이블보용·서비에트(serviette)용 직물이나 실로 구성된 세트(부속품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이와 유사한 방직용 섬유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것으로서 소매용으로 포장한 것
제8206호	제8202호부터 제8205호까지에 해당하는 둘 이상의 공구가 소매용 세트로 되어 있는 것
제8214호	그 밖의 칼붙이 제품[예 : 이발기·정육점용이나 주방용 칼붙이·토막용 칼(chopper)과 다지기(mincing)용 칼·종이용 칼], 매니큐어·페디큐어(pedicure) 세트와 용구(손톱줄을 포함한다)
제9605호	개인용 여행세트(화장용·바느질용·신발이나 의류 청소용으로 한정한다)

다만 한·EU FTA에서는 통칙 제1호의 적용 대상인 제8206.00호에 대해 제8202호부터 제8205호의 비원산지 공구의 판정과 관련된 제한을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에 직접 규정하기도 했다.

협정	품목 및 세번	원산지 결정기준
한·EU	제8206.00호 수동식 공구세트	모든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8202호부터 제8205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8202호부터 제8205호까지의 비원산지 공구의 총 가격이 세트의 공장도가격의 1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세트에 포함될 수 있다.

세트규정이 있는 경우 관련 규정을 충족했는지를 확인하는 부분에서는 실제 비원산지 상품인 베개커버가 해당 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 비율을 넘지 않는지 확인한다.

협정별 세트에 대한 규정은 대부분 유사하고 구성은 2가지로 이뤄진다. 제1항에서는 ① 세트의 모든 구성품이 원산지 상품인 경우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된다는 원칙적인 부분이 규정돼 있고, 제2항에서는 ② ①에도 불구하고 각 협정별 완제품 가격(FOB, EXW, 조정가치 등)의 일정 비율까지는 비원산지 상품의 구성을 허용한다는 예외적인 부분이 규정돼 있다. 세트물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할 때 여러 가지 고려 사항이 존재한다.

미국에서는 규정에 따라 섬유류의 경우 관세가치의 10%까지 인정된다. 이에 따라 세번변경기준 등을 적용하는 경우라도 세트를 구성하는 비원산지 상품 가치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완제품 및 해당 상품의 가격 정보가 제시돼야 할 것이다.

질의 응답 사례

본 지면에서는 관세청 고객지원센터에서 상담한 사례 중 주요 내용만을 엄선해 제공합니다. 다만 제공하는 사례는 법률적인 유권해석이 아니며, 민원인에게 참조의 편의상 제공하는 것이므로 법률적으로 권한 있는 해석이 필요할 경우 서면으로 별도 질의하거나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 신청 등의 절차를 거치시기 바랍니다.

관세청 기획조정관 납세자보호팀 고객지원센터

품목분류 / 마시멜로우 스낵의 HS Code

마시멜로우를 바삭하게 건조한 스낵의 품목분류는 어떻게 되나요?

문의하신 물품이 ‘설탕과자(백색 초콜릿을 포함하며, 코코아를 함유한 것은 제외한다)’의 ‘캔디류’의 ‘기타’에 해당한다면 제1704.90-2090호에 분류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대부분의 설탕제품을 분류하는데 고체나 반고체 물품으로 시판되고 보통 직접 식용에 적합한 것이며 총칭적으로 사탕과자·과자류나 캔디로 부른다”고 설명하고 있으니 참고하기를 바랍니다.

수입요건 / 드론의 수입요건

제8806.10-0000호에 분류되는 승객 수송용 무인기의 수입요건이 알고 싶습니다.

제8806.10-0000호에 분류되는 ‘승객 수송용으로 설계 제작된 무인기’ 수입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세관장확인 수입요건을 구비해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 [수입승인서(방위산업용품)] 「방위사업법」
군용의 것은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수출 / 미선적 물품의 수출신고 취하

수출신고 후 배송업체에 선적 관련 내용이 전달되지 않아 선적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세관으로부터 미선적 통보를 받은 뒤 수출신고를 취하할 수 있을까요?

수출신고수리 후 적재기한이 경과되면, 적재만료일의 다음 주 월요일에 미선적 과태료 부과 및 15일 이내에 선적하지 않을 경우 수리 취소된다는 예정 통보를 합니다. 이때 15일 이내 선적이 불가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 세관의 수출부서에 적재기한 연장이 가능하며, 적재기한 연장 등 조치하지 않으면 수출신고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관세법」 제250조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신고를 취하할 수 있으며,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7조(신고의 취하)에 따라 수출신고 취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7조(신고의 취하)

- ① 법 제250조 제1항에 따라 수출신고를 취하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의2 서식의 수출신고취하승인(신청)서에 신고취하신청내역을 기재하여 통관지세관장에게 전송하고, 증빙서류를 제출(전자이미지 전송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다만, 제35조의2 제1항 본문에 따른 수출신고를 취하하는 경우에는 증빙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세관장이 제2항에 따라 수출신고 취하승인하였을 때 수출신고 또는 수출신고수리의 효력은 상실된다.

수출물품의 적재기간은 1년 이내로 연장이 가능하며, 일반적으로 통관지세관 수출부서에서 목록통관으로 반출돼 선적 처리가 불가한 경우 취하 승인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출신고 취하의 심사 및 판단은 통관지 세관 수출부서에서 관련 서류를 검토해 결정하고 있습니다. 문의하신 사유로 취하 승인이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통관지 세관 수출부서에서 정확한 안내를 받기 바랍니다.

한편, 수출신고의 취하 사유 부호는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기를 바랍니다.

01 : L/C 취소(계약취소 포함), 02 : 선적연기, 03 : 선적보류, 04 : 이중신고, 99 : 기타

FTA / RCEP 적용 관련 문의

**HS Code 제7202.70-0000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일본에서 수입할 예정입니다.
일본 측에서 원산지증명서상 원산지 결정기준을 CTC/DMI로 기재할 경우
RCEP 적용이 가능한가요?**

HS Code 제7202.70호의 RCEP 원산지 결정기준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자에게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이상일 것”으로 확인됩니다. 따라서 4단위 세번변경기준 충족 시 RCEP 원산지 증명서상 ‘CTC’로 기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보다 정확한 것은 통관(예정)지 세관 및 관세청 담당 부서(FTA 집행과 042-481-3221 또는 인터넷 > 관세청 > 국민참여 > 참여광장 > 국민신문고)에서 안내받기 바랍니다.

연속판매에서 과세가격 결정 판례 해설

권종열 | 서울세관 심사총괄2과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원유, 기타 석유 및 화학제품의 제조, 판매, 수출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B는 원고의 트레이딩 사업부문이 인적분할돼 설립된 법인으로 원유, 기타 석유 및 화학제품 수출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이란국영석유공사는 이란 내 원유와 천연가스를 채굴해 전 세계에 판매하는 이란의 국영기업이다.

나. 원고는 이란국영석유공사와 매년 원유매매계약을 체결해 이란국영석유공사로부터 이란산 원유(이하 '쟁점원유'라 한다)를 공급받아왔고 2013. 1. 13.에도 이란국영석유공사로부터 2013. 2. 1.부터 2013. 12. 31.까지 쟁점원유를 매수하기로 약정했다.

다. 위 2013. 1. 13.자 계약에 따른 거래관계가 계속 중이던 2013. 7. 1. B가 설립됐고, 원고와 B는 같은 날 원고가 2013. 7.부터 2013. 12.까지 B로부터 쟁점원유를 매수하기로 약정했다. 또한 이란국영석유공사는 원고 및 B의 요청 및 그에 따른 협의를 거쳐 2013. 7. 31. 위 2013. 1. 13.자 계약의 매수인을 2013. 7. 1.부로 원고에서 B로 변경할 것에 동의했다. 이후 2013. 11. 27.에도 원고는 B로부터, B는 이란국영석유공사로부터 각 2014. 1. 1.부터 2014. 12. 31.까지 쟁점원유를 매수하기로 계약했다(다만 B와 이란국영석유공사 사이의 계약서 자체는 2013. 11. 28.에 작성됐다).

라. 위 다.항 기재와 같은 계약 체결 내지 매수인 변경 등에 따라, ① 이란국영석유공사가 B에 쟁점원유를 판매하고(이하 '이 사건 선행거래'라 하고, 이 사건 선행거래에 관한 이란국영석유공사와 B 사이의 각 쟁점원유 매매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선행계약'이라 하며, 이 사건 선행거래에 따라 B가 이란국영석유공사에 지급한 쟁점원유 대금을 '이 사건 선행거래가격'이라 한다), ② B가 같은 쟁점원유를 원고에게 재판매하는(이하 '이 사건 후행거래'라 하고, 이 사건 후행거래에 관한 B와 원고 사이의 각 쟁점원유 매매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후행계약'이라 하며, 이 사건 후행거래에 따라 원고가 B에 지급한 쟁점원유 대금을 '이 사건 후행거래가격'이라 한다) 거래구조가 형성됐다.

마. 위 거래구조에 따른 합의 하에 쟁점원유는 DAP 조건(Delivered At Place, 목적지 인도조건)으로 이란에서 선적돼 대한민국 ○○항으로 운송됐는데, B는 쟁점원유를 실은 선박이 수입항인 ○○항에 도착하기 전에 선하증권(B/L, Bill of Lading)상 수하인을 B에서 원고로 변경했으며, 원고는 선하증권상 수하인 변경통지를 받은 이후 쟁점원유에 대한 '입항전수입신고'를 하고

○○항의 해저배관을 통해 쟁점원유를 인도받아 원고의 유류탱크로 반입했다.

바. 원고는 이와 같은 절차를 총 23회에 걸쳐 쟁점원유에 대한 수입신고를 했는데, 이때 이 사건 선행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출해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했다. 그런데 이 23건의 수입신고 중 9건의 경우는 이 사건 선행거래가격이 이 사건 후행거래가격보다 낮았다.

사. 피고는 원고에 대한 관세조사를 실시한 후 “이 사건 후행거래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수출판매에 해당하므로 쟁점원유에 대한 과세가격을 이 사건 후행거래가격을 기초로 산출해야 한다”는 이유로 이 9건을 과세대상으로 삼아 각 수입신고 건의 과세가격을 이 사건 후행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증액정정하고 그에 따라 발생한 차액에 대해 추가로 부과했다(이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

아. 원고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조세심판원은 원고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원고는 소를 제기했고 1심에서 원고가 패소했고(서울행정법원 2022. 6. 10. 선고 2021구합57711 판결), 2심에서도 원고가 패소했으며(서울고등법원 2023. 11. 9. 선고 2022누51910 판결, 이하 ‘대상 판결’이라 한다), 원고가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심리불속행으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했다(대법원 2024. 4. 12.자 2023두63123판결).

2. 원고 주장의 요지¹⁾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서 규정한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한 판매’는 재화 이동이 시작되는 공급장소가 국내가 아닌 수출국임을 의미하는 반면, 이 사건 후행거래는 원고가 해외로부터 도착한 재화를 국내에서 공급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에서 쟁점원유의 과세가격은 쟁점원유를 수출국인 이란 밖으로 반출하는 데에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이 사건 선행거래가격을 기초로 산출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달리 쟁점원유의 과세가격을 이 사건 후행거래가격을 기초로 산출해야 한다고 본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수출판매거래 이후 우리나라에서의 수입신고 전에 다시 국내 거래가 있을 경우 위 수출판매거래에서의 거래가격이 해당 물품의 관세 과세가격이 되어 한다는 점은 「부가가치세법」도 이미 예정하고 있는 사항이다. 부가가치세의 징수 체계상 세관장은 해외 판매자를 대신하는 지위에서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야 하고, 수입신고인의 국내 거래가격으로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징수 체계가 심각하게 왜곡된다.

1) 이번 호에서 다루는 쟁점과 관련이 없는 내용은 기재를 생략한다. 이하에서도 마찬가지다.

3. 대상 판결의 요지

다음의 사정들을 살펴보면 연속판매 거래구조에 따라 우리나라로 수입된 쟁점원유의 과세가 격은 쟁점원유를 대한민국으로 수입하기 이전에 발생한 마지막 거래인 이 사건 후행거래에 따라 원고가 B에 지급한 쟁점원유 대금인 이 사건 후행거래가격을 기초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가. ‘수입물품’이 원고가 수입한 쟁점원유이고,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원고의 쟁점원유 수입 및 그에 대한 신고를 기초로 이뤄지므로, 쟁점원유에 대한 과세가격 역시 원고가 지급한 이 사건 후행거래가격을 기초로 산출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운송 중인 쟁점원유에 대해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이전받은 원고가 쟁점원유의 화주로서 수입신고를 한 수입자이자 관세납부의무자이고, 쟁점원유의 과세가격은 원고가 쟁점원유의 구매자로서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인 이 사건 후행거래가격을 기초로 산출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① 이 사건 선행계약과 이 사건 후행계약을 비교해 보면 가격조건 및 계약당사자를 제외한 선적항, 양륙항(대한민국의 1개 또는 그 이상의 안전한 항구), 해상운송조건(FOB 조건, 합의 시 DAP 조건 가능), 대금지급 조건 등이 동일하고, ② 특히 이 사건 선행계약과 후행계약은 모두 쟁점원유의 선적 전에 이미 체결됐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후행계약의 경우에도 FOB 조건(본선인도조건)을 원칙으로 해 쟁점원유의 인도지가 이란, 도착지가 대한민국으로 규정돼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후행거래를 수입국, 즉 국내에서의 거래라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이 사건 선행거래와 후행거래는 모두 이란으로부터 우리나라로의 수출을 목적으로 한 수출판매거래라고 봄이 타당하다.

세계관세기구(WCO, World Customs Organization) 관세평가기술위원회 예해(Commentaries) 22.1에 의하면 연속된 거래에 있어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 기준거래는 수입국으로 물품이 수입되기 이전에 발생한 마지막 거래라고 봤는데, 결국 관련 규정들을 종합하면 「관세법」 제30조 제1항의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이라는 표현은 국제 간 이동을 수반하는 거래로서 우리나라로 물품이 수입되기 이전에 발생한 마지막 판매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과세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전제로서의 거래, 즉 「관세법」에 따른 수출판매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세법」 및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7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이하 ‘WTO 관세평가협정’이라 한다) 등에 따라 판단하는 것일 뿐, 해당 거래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지 여부 등 내국세의 실제적 요건과 통일적 해석을 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후행거래가격을 관세평가가격으로 보거나 원고를 쟁점원유의 수입인으로 보더라도 「부가가치세법」과의 통일적 해석을 저해한다고 볼 수 없다.

4. 대상판결에 대한 해설

가. 관련 법령 등

「관세법」 제30조 제1항은 과세가격 결정 원칙에 대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1994. 12. 30. 가입한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속하는 「WTO 관세평가협정」 제1조 제1항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거래가격’, 즉 물품이 수입국으로 수출하기 위해 판매된 때에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을 우선적인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WCO 관세평가기술위원회가 제시하는 권고의견(Advisory Opinion, 이하 ‘권고의견’이라 한다) 14.1(“수입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된 표현의 의미)에서는 “수출판매에 해당하기 위해 그 판매가 특정 수출국에서 발생할 필요는 없다. 수입자가 검토 중에 있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판매(the immediate sale under consideration)가 수입국으로 물품을 수출할 목적으로 발생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제1조가 적용될 수 있다. 이것은 물품의 실제적인 국제 간 이동을 수반(involving an actual international transfer of goods)하는 거래만이 거래가격에 의한 평가방법으로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WCO 관세평가기술위원회 예해(이하 ‘예해’라 한다) 22.1(연속판매에서 “수입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된”이라는 표현에 대한 의미)은 둘 이상의 연속적인 물품 판매에 대한 계약으로 구성되는 연속판매(a series of sales)의 상황에서 거래가격 결정에 있어 어떠한 거래가 사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권고의견 14.1이 그 의미를 명확히 하지 못하므로 이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임을 밝히면서 (“「WTO 관세평가협정」 제1조의 근거(根底)에 깔려있는 전제는 일반적으로 구매자는 수입국에 소재하고 있고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은 이 구매자가 지급한 가격에 기초한다는 견해를 갖고 있다. 기술위원회는 연속판매 상황에서 수입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된 때에 수입물품에 대하여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은 첫 번째(또는 이전) 판매 대신에 수입국으로 물품이 수입되기 이전에 발생한 마지막 판매에서 지급된 가격이라고 결론짓는다. 이러한 결론은 협정의 목적과 전체적인 문맥에 부합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관세청 고시인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제15조(수출판매의 범위) 제2항에서는 “「관세법」 제3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한 가격은 해당 물품의 실제적인 국제 간 이동을 수반하는 거래로서 우리나라에 도착하기 직전에 이루어진 판매에서의 가격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연속판매에서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해외 사례

1) 미국

미국은 니쇼 이와이(Nissho Iwai) 판결²⁾에 따라 연속판매에서 최초판매(first sale)라고 하더라도 수입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했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최초 판매를 수출판매로 인정하고 있으며, 현재에도 기존 해석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³⁾

다만, 미국에서도 연속판매 중에서 최초판매에서 지급한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 판결의 취지에 따라, 수입자는 최초판매가 ① 명백히 미국으로 수출이 예정되었음과 ② 독립기업원칙에 따라 거래됐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세관에 제출해야 한다.⁴⁾

2) EU

EU는 ‘관세법 시행규정(UCC IA,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제128조 제1항에서 “EU 관세영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된 물품의 거래가격은 물품이 관세영역으로 반입되기 직전에 발생하는 판매에 기초하여 관세신고 수리시점에 결정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⁵⁾

EU도 과거에는 원칙적으로 최종판매(last sale)를 수출판매로 인정하면서도 예외적으로 수입자가 입증하는 경우 최초판매(first sale)도 인정하는 입장이었으나⁶⁾, 위와 같이 법령을 개정해 2016년부터 시행하면서 기존의 최초판매 규정을 없애고 최종판매만을 인정하는 것으로 변경했다.⁷⁾

3) 일본

일본 ‘관세정률법’ 기본통달⁸⁾ 4-1에서는 물품이 수입되기 전까지 해당 물품에 대해 복수의 거래(매매 이외의 거래를 포함한다)가 이뤄진 경우에는 실제로 해당 물품이 일본에 도착하게 한 매매가 ‘수입거래’가 되며, 다음과 같은 예를 들면서 최종거래 가격이 과세가격이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2) Nissho Iwai American Corporation v. United States, 16 CIT 86, 786 F. Supp. 1002 (1992) rev'd 982 F.2d 505 (Fed. Cir. 1992)

3) 김기인, <관세평가정해>, 한국관세무역개발원, 2015, 78 ~ 82면

4) 미국 재무성 일반고시 T.D. 96 ~ 87

5) 원문 : The transaction value of the goods sold for export to the customs territory of the Union shall be determined at the time of acceptance of the customs declaration on the basis of the sale occurring immediately before the goods were brought into that customs territory.

6) 김기인, 위의 책, 79 ~ 80면

7) 김봉철, 'EU 통관환경의 주요 내용과 유의점', 한국원산지정보원, <FTA TRADE REPORT> Vol.02(통권 14호), 2016, 215면

8) 통달은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제정되는 행정 내부 지침이다.

외국의 어떤 거주자(이하 ‘갑’)와 일본의 어떤 거주자(이하 ‘을’) 간에 물품을 일본에 도착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갑과 일본에 있는 을 이외의 어떤 거주자(이하 ‘병’) 간에 해당 물품을 일본에 도착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매매계약이 체결돼 을의 지시에 따라 해당 물품이 갑에게서 병에게로 수출되고 병에 의해 수입된 경우에는 을과 병 간의 매매가 ‘실제로 해당 물품이 일본에 도착하게 된 매매’이기 때문에 을과 병 간의 매매가 수입거래가 된다.

다. 대상판결에 대한 검토

우선 이 사건 선행거래와 후행거래 각각을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서 규정한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 즉 수출판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후 이 사건 선행거래와 후행거래가 모두 수출판매에 해당한다면 선행거래와 후행거래 중 어느 거래에 따른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할 것인지를 검토하는 순서로 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권고의견 14.1에서는 수출판매의 의미에 대해 “물품의 실제적인 국제 간 이동을 수반(involving an actual international transfer of goods)하는 거래만이 거래가격에 의한 평가방법으로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 사건 선행계약과 이 사건 후행계약은 모두 쟁점원유가 이란에서 선적되기 전에 이미 체결됐을 뿐만 아니라 FOB 조건(본선인도조건)을 원칙으로 해 쟁점원유의 인도지가 이란, 도착지가 대한민국으로 돼 있는바, 이 사건 선행거래와 후행거래는 모두 쟁점원유가 이란에서 우리나라로 이동을 수반하는 거래, 즉 권고의견 14.1에서 설명하는 물품의 실제적인 국제 간 이동을 수반하는 거래라고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선행거래와 후행거래는 모두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서 규정한 수출판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선행거래와 후행거래가 모두 수출판매에 해당하므로, 선행거래와 후행거래 중 어느 거래에 따른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할 것인지를 살펴본다.

예해 22.1에서는 연속판매에서 과세가격은 첫 번째(또는 이전) 판매 대신에 수입국으로 물품이 수입되기 이전에 발생한 마지막 판매에서 지급된 가격이라고 결론짓는 것이 협정의 목적과 전체적인 문맥에 부합한다고 설명하고 있어, 연속판매에서 과세가격은 최초판매(first sale)가 아니라 최종판매(last sale)에서 지급한 가격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한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제15조 제2항에서는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한 가격은 해당 물품의 실제적인 국제 간 이동을 수반하는 거래로서 우리나라에 도착하기 직전에 이루어진 판매에서의 가격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규정은 2021. 2. 23. 관세청고시 제2024-37호로 개정 시 신설된 것으로 그 개정 이유에서 “수입물품이 수개의 연속된 거래(연속 판매)에 의해 우리나라에 도착한 경우, 거래가격의 기초는 ‘우리나라에

도착하기 직전에 이루어진 판매(last sale)에서의 실제지급가격이어야 한다는 예해 22.1의 'last sale 원칙' 반영"이라고 설명하고 있다.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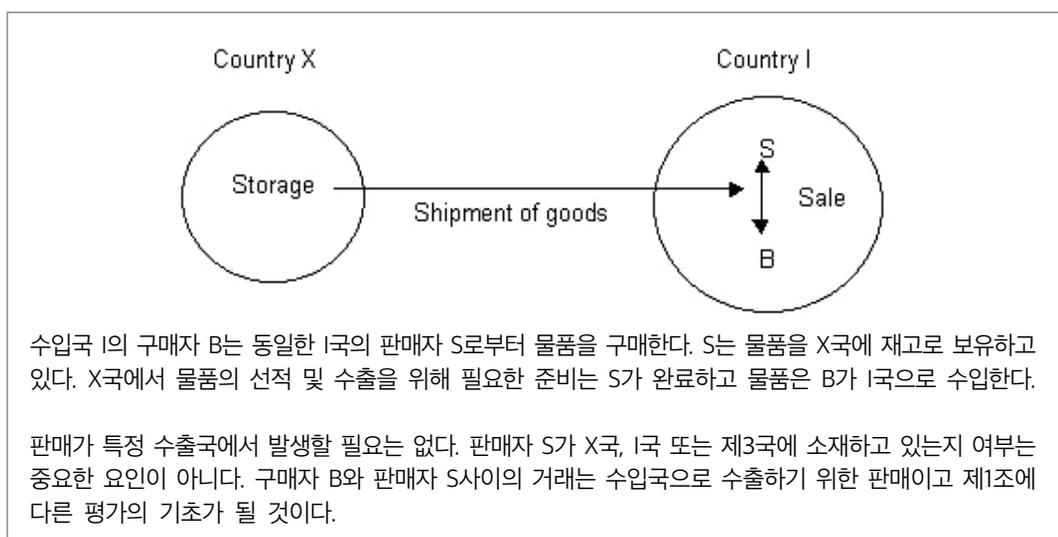
또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EU, 일본 등 대부분의 국가들이 연속판매거래에서 최초판매(first sale)가 아니라 최종판매(last sale)에서 지급한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다만, 미국은 수입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했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최초판매를 수출판매로 인정하고 있으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WCO(예해 22.1), 우리나라를 비롯해 EU, 일본 등 대부분의 국가들이 취하고 있는 최종판매(last sale) 입장과는 상반되는바, 이와 같은 미국의 해석이나 적용은 일반적이라기보다는 해당 국가에만 적용되는 특별한 해석 방법으로 보인다.

또한 대상판결에서 원고는 이 사건에서 선행거래만 수출판매이고 후행거래는 우리나라의 국내 거래라고 전제하고 「부가가치세법」과의 통일적 해석' 관련 주장을 하고 있으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선행거래와 후행거래가 모두 수출판매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원고 주장은 그 전제가 타당하지 않다고 보인다.

한편, 권고의견 14.1 사례 2에서는 판매가 반드시 특정 수출국 내에서 발생할 필요가 없고 판매자가 수입국 등에 소재하고 있는지 여부는 중요한 요인이 아니라고 설명하면서, 판매자와 구매자가 모두 수입국에 소재하는 경우에도 수출판매에 해당한다고 설명하고 있어, 대상판결에서 판매자인 B와 구매자인 원고가 모두 수입국인 우리나라에 소재한다고 해서 이 사건 후행거래가 수출판매에 해당된다는 점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 권고의견 14.1 사례 2 ●



9) 관세법령정보포털(unipass.customs.go.kr/clip)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선행거래와 후행거래는 모두 쟁점원유가 이란에서 우리나라로 이동을 수반하는 거래이므로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서 규정한 수출판매에 해당하고, 예해 22.1에 따라 연속판매에서 과세가격은 최초판매가 아니라 최종판매에서 지급한 가격이라고 보는 것이 협정의 목적과 전체적인 문맥에 부합하며, EU나 일본 등 대부분의 국가들이 연속판매에서 최초판매가 아니라 최종판매에서 지급한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바, 이 사건 후행거래에 따른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한다는 대상판결의 결론은 타당하다고 본다.

정빙기(整氷機)의 품목분류

- WCO HS위원회 결정 -

김진용 |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3과

I. 개요

요즘은 겨울철이라 많은 사람이 스케이트를 타기 위해 빙판을 찾는다. 빙판 위를 신나게 달리고 싶을 때면 언제든 찾아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아이스링크다.

이전부터 스포츠 경기를 관람하면서 빙판은 어떻게 관리되는지 늘 궁금했다. 스케이트 날에 부서지고 깨진 얼음조각은 어떻게 하는지, 움푹 패이고 깎인 곳은 어떻게 메우는지, 또 30℃를 넘나드는 무더위 속에서는 어떻게 빙판을 식히고 다시 얼리는지 의문투성이었다.

정빙기는 빙판 위에 뿌려진 얼음 찌꺼기를 펌핑 탱크로 흡입하고, 정빙 칼날(블레이드)로 빙판을 0.1 ~ 0.2mm 정도로 깎아내면서 빙판 표면에 온수를 뿌려 파인 얼음판의 틈새를 채워주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 모든 작업이 거의 동시에 이뤄지면서 유리알 같은 얼음판으로 만들어 준다.



정빙기(출처 : 위키백과)

정빙기(Ice resurfacer)는 빙포차(氷鋪車)¹⁾, 빙판 포장차 또는 잠보니(Zamboni)로도 불린다. 정빙기는 최상의 빙면 온도와 빙질을 제공하기 위해 아이스링크의 표면을 고르게 하는 작업 차량이다. 1949년 캘리포니아에서 미국인 프랭크 잠보니(Frank J. Zamboni)가 정빙기를 발명하며 오늘날은 상품명에 일반명사처럼 쓰이게 됐다.

이러한 정빙기는 동계올림픽 등 스포츠 경기에서도 많이 볼 수 있다. 동계올림픽에서 얼음 상태는 선수들의 안전, 기록, 연기 내용을 결정적으로 좌우한다. 스케이트 종목이나 아이스하키, 컬링 등이 펼쳐지는 빙판은 얼마나 평평하고 균질하게 얼음을 얼리는지가 관건이다. 온도가 너무 높거나 낮아도 안 되고, 두께가 규정에서 벗어나도 곤란하다.

이번 호에서는 정빙기의 품목분류에 대한 세계관세기구(WCO) HS위원회 결정사항을 살펴보고자 한다.

II. 쟁점 사례

□ 물품 설명

- 일반적으로 자주식 얼음 충전용 기계(ice-filling machine)로 알려진 쟁점물품은 빙상 경기장과 아이스링크의 표면을 매끄럽게 하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자주식 기계임.
 - 제조사 홈페이지에는 ‘Self-Propelled Resurfacers’라고 표기
 - 자주식 얼음 충전용 기계는 기본적으로 눈 탱크, 물 탱크, 컨디셔너 및 보드 브러시로 구성됨.
- 쟁점 세번 : 제8479.10호(토목공사·건축이나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하는 기계류)
제8479.89호(그밖의 기계)

1) 빙포차(氷鋪車, 영어: Ice resurfacer) 또는 정빙기(整氷機)는 빙판을 평평하고 고르게 만드는 작업을 할 때 쓰이는 차량이다. 미국인 프랭크 J. 잠보니(Frank Joseph Zamboni, Jr.)가 1949년에 캘리포니아에서 발명했다. 빙판포장차(氷板鋪裝車)라고도 한다. 아울러, 잠보니(Zamboni)란 이름으로 미국 및 국제 상표등록을 마쳤으므로, 미국에서는 잠보니란 이름 자체가 빙포차를 가리키는 대명사처럼 사용되기도 하며, 네덜란드어 등의 외국어에서도 잠보니가 빙포차를 가리키는 뜻으로 쓰이기도 한다. 정빙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컨디셔너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것은 정빙기 뒤에 있는 큰 장치다. 공업용 종이 절단기와 비슷한 크고 아주 날카로운 칼날이 얼음 표면을 평평하게 깎는다. 그리고 칼날 앞의 나사송곳(auger)은 얼음 표면을 깎아서 축적되는 얼음 조각들을 컨디셔너의 중앙 부분으로 쓸어낸다. 그리고 두 번째 나사송곳이 그것들을 주워낸다. 초기 모델은 주걱과 체인으로 이루어진 운송기로 돼 있었다(출처 : 위키백과).

○ 제8479.10호 논지

쟁점물품은 HS 4단위인 제8479호[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로 분류되며, 핵심 쟁점은 HS 6단위 분류에 있어 쟁점물품의 용도가 '토목공사(public works)·건축이나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하는 것'인지 여부임.

제8479.10호에는 '토목공사(public works)·건축이나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하는 기계류'가 분류되고,

쟁점물품은 다양한 스포츠 행사 중 빙상 경기장이나 아이스링크의 얼음 표면을 매끄럽게 유지하기 위해 사용하며, 즉 '대중' 이용에 필요한 얼음 유지보수를 위해 사용되는 공공작업(public works)을 수행하기 위한 기계이므로 제8479.10호에 해당함.

또한, 제8479.10호 용어는 제8479.89호 용어보다 더 구체적인 설명을 포함하고 있으며, 잔여 호인 제8479.89호에 분류하기 이전에 특게 소호인 제8479.10호에 우선 분류됨.

따라서 쟁점물품은 '토목공사(public works)·건축이나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하는 기계류'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6호에 따라 제8479.10호에 분류함.

○ 제8479.89호 논지

제8479.89호에는 '그 밖의 기계'가 분류되고,

쟁점물품이 제8479.10호의 '토목공사(public works)·건축이나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하는 기계류'에 해당하는지 검토해 보면,

'공공작업(public works)'의 표준적인 정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정부가 자금을 조달하고 소유하는 도로, 교량, 학교와 같은 공공 용도를 위한 기반 시설 프로젝트, 건설 또는 개발 프로젝트의 광범위한 범주로 설명됨.

제8479.10호의 '공공작업(public works)'과 '이와 유사한 용도'라는 용어는 공적인 목적에 부합하는 공공자산 및 시설 건설과 개발에 사용되는 것으로 판단되나, 빙상 경기장과 아이스링크의 얼음 표면 유지는 이러한 개념에 부합하지 않음.

이는 빙상 경기장과 아이스링크를 공공 자산 및 시설로 볼 수 없고 항상 모든 사람이 접근 가능하거나 공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임.

따라서 쟁점물품은 제8479.10호의 '토목공사(public works)·건축이나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하는 기계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6호에 따라

제8479.89호에 분류함.

○ 논의 결과

쟁점물품은 WCO에서 논의 후 제8479.89호로 결정됐다. 해당 결정은 다음과 같이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의 별표 2(HS 품목분류의견서)로 국내 수용됐다.

● 쟁점물품 ●

8479.89 13. 자주식 아이스 - 필링 기계

아이스 아레나(빙상 경기장)와 아이스 링크(스케이트 경기장)의 표면을 평탄화시키는 단일 기능을 갖고 있음.

본 기기는 필수적으로 스노우 탱크, 물 탱크, 컨디셔너, 보드브러시로 구성되어 있다.

본 물품의 기술 규격서는 다음과 같다.

디젤 엔진

폭 213cm의 커팅 칼날

물 탱크(795.6ℓ)

스노우 탱크(2,915m)

컨디셔너는 아이스 표면을 복원하는 주요 기기다. 아이스 절단 시스템, 아이스 세척 시스템, 아이스 필링 시스템과 아이스 조각을 모으는 컨베이어로 구성된다.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 A: Snow tank
- B: Board brush
- C: Water tank
- D: Wash water tank
- E: Driver seat
- F: Conditioner



III. 사례 해설

지금까지 정빙기의 품목분류를 살펴봤다. 그렇다면 수출입 화주, 신고인 등 이해관계자가 수출입 통관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이번 정빙기 품목분류 결정의 세부 사항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첫째, 제8479.10호의 용어인 ‘토목공사·건축이나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하는 기계류’의 범주, 둘째 ‘public works’ 관련 기계의 품목분류 검토 사항, 셋째로 유사한 물품의 품목분류 결정 동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제8479.10호의 용어인 ‘토목공사·건축이나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하는 기계류’의 범주를 살펴보면, HS 제8479호 해설서상 ‘토목공사·건축이나 이와 유사한 용도’를 ‘특정 산업(certain industry)’으로 봤으며, 호 해설서상 개념은 다음과 같다.

■ 제8479호 해설서

(II) 특정산업용의 기계류(machinery for certain industries)

이 그룹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A) 공공작업·공공건축이나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하는 기계류. 예 :

(1) 모르타르(mortar)나 콘크리트의 살포용 기계(콘크리트나 모르타르 조제용 혼합기는 제외한다)(제8474호나 제8705호)

(2) 도로공사용 기계로서 도로를 견고히 하고 그 표면을 등글게 하기 위하여 콘크리트를 진동시키며 때로는 콘크리트를 살포하는 것

다만, 이 호에는 제8429호에 해당하는 레벨러(leveller)는 포함하지 않는다.

(3) 도로나 이와 유사한 표면에 자갈을 까는 기계[자주식(自走式)인지에는 상관없다]와 아스팔트질의 도로표면재료를 살포하며 다지는 자주식(自走式)의 기계. 다만, 자동차의 새시에 장치된 자갈 살포기는 제외한다(제8705호).

(4) 응고되지 않은 콘크리트·아스팔트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부드러운 표면을 평평하게 하거나 흠을 파거나 체커링(checkering) 등을 하는 기계류

아스팔트 등의 가열기기는 제외한다(제8419호).

(5) 도로의 유지용으로 보행자에 의하여 운전되는 소형의 동력장치[예 : 청소기·백선 긋는 기계(white line painter)]

제8701호의 트랙터에 의하여 작동되는 차량이 붙은 새시 위에 쓰레기 용기와 철수(撒水)장치를 함께 갖춘 기계식 회전비는 트랙터와 함께 제시하더라도 교환장치로서 이 호에 분류한다.

(6) 화물자동차에 탑재하도록 설계·제작된 세설용 소금과 모래 살포기 : 소금덩어리를 분쇄하고 갈아 뺀 덩어리 분쇄 교반기(攪拌機 : agitator)를 갖춘 모래와 소금 저장용 탱크와 살포용 디스크를 포함한 수압식 분사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기계의 다양한 기능은 원격조종에 의하여 화물차의 운전석에서 작동한다.

또한 ‘public works’의 사전적 개념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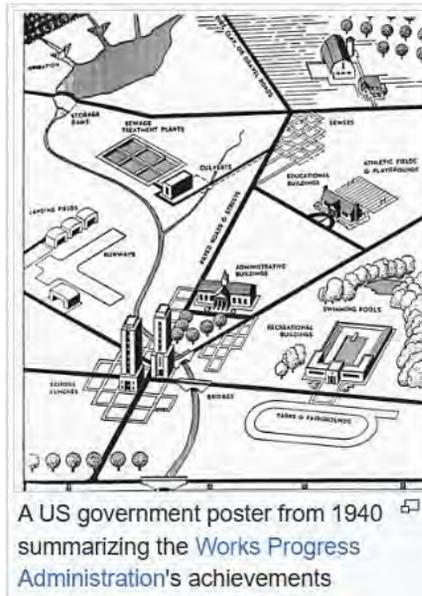
[두산백과] 공공사업(public works)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자본인 도로·항만 등을 건설하고 유지하는 일

[행정학사전] 공공사업(public works) 중앙정부 혹은 지방정부가 공공의 목적을 위해 기획하고 집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도로·철도·교량·항만 등의 건설 및 보수와 학교·공공병원 등의 건설이 예에 속한다.

[Cambridge Dictionary] the building of roads, hospitals, etc. that is paid for by the government : 정부가 지불, 집행하는 도로, 병원 등의 건설

[Merriam-Webster] works(such as schools, highways, docks) constructed for public use or enjoyment especially when financed and owned by the government : 특히 정부의 자본과 소유인 공공 용도 혹은 오락을 위해 건설된 작업(학교, 고속도로, 도크 등)

[Wikipedia] 공공사업(公共事業)이란 나라에서 하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일이다. 국가는 공공사업을 통해 빈곤층에게 직업을 제공하고 국민들의 만족도를 높인다. 공공사업은 더 나은 사회를 위해 레크리에이션, 고용, 의료, 안전을 목적으로 정부가 자금을 대고 건설이 이뤄지는 기반 시설 프로젝트의 큰 분류다. 공공 사업은 고대부터 장려돼 왔다. 이를테면, 로마 황제 네로는 디플레이션 기간 중에 다양한 기반 시설 프로젝트의 건설을 장려했다.



제8479호 해설서상 ‘public works’는 주로 도로의 건설[예시품목 (1) ~ (4)]과 유지[예시품목 (5) ~ (6)]을 예시하고 있다. 즉, 도로 건설과 유지에 대한 내용인 것이다.

또한 앞서 언급한 사전적 의미를 종합해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도로·철도·교량·항만, 학교·공공병원, 엔터테인먼트 등을 건설 또는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제8479호 해설서에서는 ‘public works’의 대상으로 ‘도로’만 예시했으나, 사전적으로는 도로 이외에도 다양한 정부나 지자체의 공공적 용도의 건설 또는 토목작업을 포함한다.

그렇다면 쟁점물품에 대해 살펴보면, 쟁점 기계의 용도는 빙상 경기장용으로 제작된 것이므로 쟁점 기계의 빙상 경기장 또는 아이스링크의 빙질 유지 용도가 ‘public works’의 개념에 부합하는지 검토해 보면 될 것이다.

WCO HS위원회에서는 ‘public works’의 개념을 정부가 자금을 조달하고 소유하는 도로, 교량, 학교와 같은 공공 용도를 위한 기반 시설 프로젝트, 건설 또는 개발 프로젝트의 광범위한 범주로 설명했다.

WCO에서 본 건 품목분류 검토 시, 제8479.10호의 ‘public works와 이와 유사한 용도’라는 용어는 공적인 목적에 부합하는 공공자산 및 시설 건설과 개발에 사용되는 것으로 봤다. 하지만 빙상 경기장과 아이스링크의 얼음 표면 유지는 이러한 개념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빙상 경기장과 아이스링크를 공공 자산 및 시설로 볼 수 없고 항상 모든 사람이 접근 가능하거나 공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쟁점물품의 용도를 제8479.10호의 ‘public works와 이와 유사한 용도’로 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public works 관련 기계의 분류 검토사항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제8479.10호는 용도(use)에 따라 분류되는 소호다. 다시 한번 소호 용어를 살펴보면, ‘토목공사·건축이나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하는 기계류’로서 영문으로는 ‘Machinery for public works, building or the like’다.

‘용도(use)’는 기능(function)과 달리 물품이 사용되는 산업에 따라 제84류의 특정 호 또는 소호에 분류된다. 즉, 아래 제84류 주 제2호와 같이 기능에 따른 분류(통상 제8401호 ~ 제8424호)를 제외하고, 제8425호 ~ 제8478호의 특정 산업에 분류되지 않는다는 전제로, 그 용도가 ‘public works’에 해당하는 기계라면 제8479.10호에 분류되는 것이다.

■ 제84류 주 제2호

2. 제16부의 주 제3호나 이 류의 주 제11호에 따라 적용될 호가 정하여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8401호부터 제8424호까지와 제8486호의 하나 이상의 호에 해당하는 기기가 동시에 제8425호부터 제8480호까지의 하나 이상의 호에도 해당되는 경우, 이 기기는 제8401호부터 제8424호까지의 적합한 호로 분류하거나 경우에 따라 제8486호로 분류하고, 제8425호부터 제8480호까지에는 분류하지 않는다.

즉, ‘public works’ 용도 관련 기계를 제8479.10호에 분류하기 이전에 제8401호 ~ 제8424호의 기능 분류 세번에 분류되는지 우선 검토하고, 또한 제8479호는 제84류의 잔여 호이므로 제8425

호 ~ 제8478호의 산업별 분류에서 우선 제외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통상 제8479.10호의 기계는 제8429호와 제87류의 수송기계 등과 품목분류 결정 시 경합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다른 호 해설서에서 ‘public works’ 수행 기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제8429호 용어
 자주식(自走式) 불도저(bulldozer)·앵글도저(angledozer)·그레이더(grader)·레벨러(leveller)·스크레이퍼(scraper)·메커니컬셔블(mechanical shovel)·엑스캐베이터(excavator)·셔블로더(shovel loader)·탬핑머신(tamping machine)·로드롤러(road roller)

■ 제8429호 해설서
 (E) 자주식(自走式) 로드롤러(road roller) : 도로건설이나 그 밖의 토목공사에 사용한다(예 : 토지용이나 노면의 롤링용)
 : Self-propelled road rollers as used in road building or other public works(e.g., for levelling the ground or rolling the road surface).

■ 제8716호 용어
 트레일러와 세미트레일러, 기계구동식이 아닌 그 밖의 차량, 이들의 부분품

■ 제8716호 해설서
 (4) 물품수송용의 그 밖의 트레일러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a) 탱커 트레일러(tanker trailer)(펌프를 부착했는지에 상관없다)
 (b) 농업용·토목공사용 등의 트레일러[경사식(傾斜式)인지에 상관없다]
 : Agricultural, public works, etc., trailers(whether or not tipping).

따라서 위 해설서 예시 품목인 자주식 로드롤러와 토목공사용 트레일러는 public works에 사용된다 하더라도 각각 제8429호에 분류되고, 제8716호에 분류되는 것이다.

물론 다음과 같이 제8716호는 제16부 주 제1호에서 제17부의 물품을 제외하므로 제8479호 분류에 앞서 제8716호를 우선 분류해야 한다. 물론 제16부 주 제1호에 따라 제90류(광학, 측정기기 등)와 제91류(시계 등) 등도 제8479호에 우선해 검토하는 것이 당연하다.

■ 제16부 주 제1호
 1. 이 부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 <중략> ...

카. 제17부의 물품
 타. 제90류의 물품
 파. 제91류의 시계와 그 밖의 물품

셋째로 품목분류 결정 사례를 검토해 통상 어떤 물품이 제8479.10호에 분류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 도로 평탄화 기계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879
시행일자	2016년 2월 25일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공개 여부	공개
결정 세번	제8479.10-9000호
품명	Other machinery for public works, building or the like ; TRUSS SCREED(VTS-600)
물품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품 개요 - 콘크리트로 타설된 바닥면을 평탄하게 하는 기계
물품 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품의 형태 및 동작 원리 - 구성 요소 : 가솔린엔진, 철제프레임, 캄샤프트로 구성돼 있으며 작업범위는 3 ~ 18m이며 1m 단위로 프레임의 연장이 가능 - 가솔린 엔진이 구동되면 엔진의 회전력이 캄샤프트를 회전시키고, 회전하면서 발생하는 캄샤프트의 상하진동으로 콘크리트 바닥면이 평평해짐
결정 사유	<p>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p> <p>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a) 어떤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이 류에서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품목분류표의 다른 어떤 류의 호에 특별히 분류되지 않은 것, (c) 기계류의 품명·기능 또는 형식에 의하여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하는 것 및 기계류의 사용 목적 또는 이러한 기계를 사용하는 산업에 따라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하거나 또는 둘 또는 그 이상의 다른 호에 동시에 분류될 수 있는 것(범용성기계)의 이유 때문에 이 류의 어떤 다른 특정 호에 분류될 수 없는 것의 3가지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에 한하여 적용된다”라고 해설하고</p> <p>“이 호에 분류되는 많은 각종의 기계류에는 특정산업용의 기계류가 포함되고, 또한 이 그룹에는 ‘공공작업·공공건축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기계류’가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응고되지 아니한 콘크리트·아스팔트 기타 이와 유사한 연상(軟狀)의 표면을 평평하게 하거나 흠을 파거나 checkering 등을 하는 기계류”를 구체적으로 예시하고 있음.</p> <p>본 건 물품은 콘크리트로 타설된 바닥면을 평탄하게 하는 기계로 기타의 토목공사·건축이나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하는 기계류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6호에 의거 제8479.10-9000호에 분류함.</p>

관련
이미지



□ 얼음 파쇄기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761
시행일자	2014년 6월 3일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공개 여부	공개
결정 세번	제8479.10-9000호
품명	ICE BREAKING MACHINE ; YDIB0825 ; PR.CHNA

- 물품 개요**
 도로상의 결빙 및 단단히 굳은 눈을 제거하기 위해 얼음 또는 눈을 파쇄하며 파쇄날을 이용해 앞으로 밀어내는 기기
 폭 2,731 높이 1,705 전장 1,274 mm
- 물품 설명**
- 작동 원리
 단독으로는 작동할 수 없고 반드시 차량에 부착돼 작동하며 별도의 동력 없이 차량이 전진하는 힘과 기기 자체의 하중에 의해 날카로운 파쇄날이 부착돼 있는 드럼형태의 장비가 회전하면서 결빙된 도로의 눈과 얼음을 파쇄와 동시에 앞으로 밀어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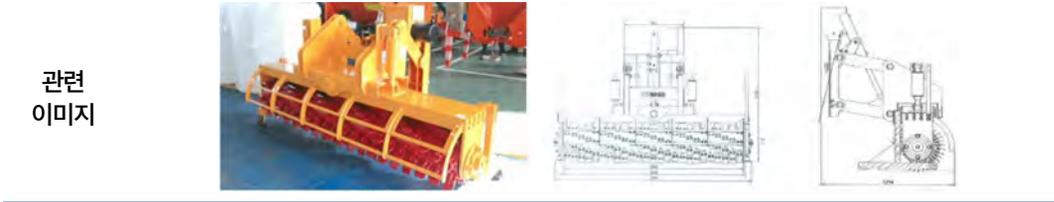
관세율표 제84류 총설에서는 “(B) (4)제8479호에는 이 류의 전 어느 호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는 기계와 기계식기구를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8479.10호에서 ‘토목공사·건축이나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하는 기계류(Machinery for public works, building or the like)’를 세분류하고 있음.

또한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a) 어떤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이 류에서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품목분류표의 다른 어떤 류의 호에 특별히 분류되지 않은 것. (c) 다음의 이유 때문에 이 류의 어떤 다른 특정 호에 분류될 수 없는 것

- (i) 기계류의 품명·기능 또는 형식에 의하여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하는 것 및 (ii) 기계류의 사용 목적 또는 이러한 기계를 사용하는 산업에 따라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하거나 또는 (iii) 둘 또는 그 이상의 다른 호에 동시에 분류될 수 있는 것(범용성기계)”라고 해설하고 있음.

따라서 본 물품은 도로상의 결빙 및 단단히 굳은 눈을 제거하기 위해 얼음 또는 눈을 파쇄하며 파쇄날을 이용해 앞으로 밀어내는 기기로서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되고 고유의 기능을 가지고 있으나 이 류의 다른 곳에 포함되지 않는 제품으로써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8479.10-9000호에 분류함.



□ 아스팔트 밀링기

기준년도 2020년

참조번호 DEBT124466/20-1(독일)

시행일자 2020년 8월 25일

결정 세번 제84791000호

물품 설명 Asphalt milling machine PL 50.20, PL 60.20, PL 75.20, PL 1000, PL 1200, PL 40.35, PL 60.25, PL 100.25, PL 25.10, PL 35.15, PL 40.15, PL 45.20, PL 55.20 - from a specific mounting frame with toothed milling drums, hydraulic unit, Skids and atomizer system for dust binding, depending on the version with or without an integrated water tank (see attachment for illustration), - after attachment to a front shovel loader **for removing asphalt, concrete and screed in road construction**. The milling machine performs the main characteristic activity. "Machine with its own function, not mentioned or included elsewhere in Chapter 84, for road construction or for similar work (combination of milling unit - characteristic main activity and atomizing system) - so-called asphalt milling machine"

관련
이미지



□ 눈 제거용 소금 및 모래 스프레더

기준년도 2008년

참조번호 D-1-0000-2008-0503(중국)

결정 세번 제847910호

품명 Salt and sand spreader for clearing snow

물품 설명 Mounted on the truck, including the following components: 1 a container of sand and salt loading, mixing device **built into an obstacle blocks(work, the rotation as a stirring device like a worm)**; 2 one for crushing / grinding. system of salt blocks; 3. a spread plate hydraulic injection system with. The various functions of the device in the truck cab by remote control operation.

결정 사유 Classified according to: a collation of the General Rules and six; subheadings number: 8479.10; subheading No. 1.

이처럼 국내의 사례와 같이 도로 등 건설 또는 유지를 위한 기계가 통상적으로 제8479.10호에 분류된다.

따라서 정부·지자체의 도로, 항만 등 건설 또는 유지를 위한 기계라면 제17부(수송기기), 제8401호 ~ 제8478호 등에 우선 분류되는지 검토하고, 해당 세번에 분류되지 않는다면, 제8479.10호에 분류 가능한 것이다.

IV. 시사점

이번 호에서 public works 관련 기계의 품목분류를 살펴봤다.

WCO 결정을 통해 ‘public works’의 개념을 정립할 수 있었고, 관련 기계들의 분류를 보다 명확히 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이번 결정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점이 남는 것도 사실이다. 제8479.10호의 용어에는 ‘public works’가 ‘토목공사’로 번역돼 있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공공작업’으로 번역돼 혼란을 줄 여지가 있다. 물론 둘다 비슷한 개념이긴 하지만, 향후 HS 개정 시 용어 번역을 통일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번 호에서 언급한 정빙기의 품목분류 결정 사례를 참고해 무역업체, 신고인, 관세청 등에서는 유사한 제품의 구조, 기능 및 용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수출입신고 시 적절한 세번으로 분류하기를 희망한다.

* 이 글에서 제기한 의견 등은 필자가 소속한 기관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삼투 탈수방식으로 보존처리한 망고 분류 사례 - 2023년도 4월 품목분류 사전심사 -

김 흥 관 | 부산세관 분석실

1. 물품 소개



※ 해당 사진은 품목분류 사례와 관련 없음

인류의 생존과 번영에 있어 식량 생산과 가공 기술은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다. 특히 농산물을 더 오래 보관하고 효율적으로 소비하기 위한 건조 기술은 오랜 역사를 거치며 발전해 왔다. 지금도 저장성과 수송성을 높이기 위해 농산물 건조 방법은 널리 사용되고 있는데, 이번 호에서는 다양한 농산물 건조 방법을 살펴본다.

농산물 건조는 수분을 제거해 미생물 번식을 억제하고 부패를 방지하는 가공 방법으로, 저장성과 수송성을 높이기 위해 고대부터 널리 사용됐다. 초기에는 태양 아래에서 말리는 양건(천일 건조)이나 바람이 잘 통하는 그늘에서 말리는 풍건 방식이 주로 활용됐다. 이러한 전통적인 방법은 지금도 일부 전통 식품 가공에 사용된다.

농산물 건조 기술은 현대에 들어서며 세분화되고 발전했다. 현대 사회에서는 건조 환경(온도, 습도, 풍량 등)을 세밀히 제어하는 기술이 개발되면서 다양한 건조 방법이 등장했다. 이러한 기술은 농산물의 저장성뿐 아니라 맛과 영양까지 보존하며 새로운 가공품을 생산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태양 건조부터 삼투 건조까지 ... 다양한 건조 기술과 활용 사례

농산물 건조는 식품의 저장성을 높이고 풍미를 강화하며, 소비자에게 더욱 다양하고 편리한 형태로 제공할 수 있는 효과적인 가공 방법이다. 건조 기술은 각기 다른 특성과 장점이 있으며, 활용 분야 또한 다양하다. 주요 건조 기술과 그 활용 사례를 소개한다.

● 태양 건조(천일 건조)

태양 건조는 가장 전통적인 건조 방식 중 하나로, 태양열과 자연 바람을 활용해 농산물의 수분을 증발시키는 방법이다. 별도의 에너지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지만, 날씨와 계절에 따라 작업이 제한되는 단점이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비닐하우스를 활용한 태양광 건조 장치가 사용되기도 한다. 태양광 건조로 만드는 농산물에는 우리나라 전통 식품인 태양초, 무말랭이, 호박고지가 있으며, 건조 과일로는 건포도, 말린 무화과 등이 대표적이다. 또한, 열대 지역에서는 토마토와 같은 과채류를 건조해 요리 재료로 많이 활용하고 있다. 이처럼 농산물을 보존하고 풍미를 살리는 데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

● 열풍 건조

열풍 건조는 단열된 건조실 내부에 전기 또는 화석연료로 가열한 공기를 송풍기로 공급해 농산물의 수분을 제거하는 방법이다. 건조 온도와 배기량을 조절해 건조 속도를 정밀하게 제어할 수 있어 효율적이며, 농가형 건조기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다.

열풍 건조는 태양 건조를 대체한 가열 건조 방식으로, 대량 생산과 안정적인 품질 유지가 가능하다. 이를 통해 생산된 것으로는 건고추, 건조 채소, 건조 과일 등이 있으며, 농가형 가공시설에서는 이를 활용해 과일 칩, 채소 칩과 같은 스낵 제품을 생산하기도 한다.

● 드림 건조

드림 건조는 가열된 드림 표면에 액상 농축액을 얇게 도포한 후, 수분을 증발시키는 건조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스크래퍼로 고체화된 피막을 긁어내 회수한 뒤, 분쇄해 분말 형태로 가공한다. 분무 건조가 보편화되기 전 주로 사용됐으며, 액상 원료를 건조하는 데 적합하다. 대표적인 활용 사례로는 분유 제품 생산이 있다.

● 분무 건조

분무 건조는 액체 식품을 미세한 방울로 분사해 고온의 공기 중에서 즉시 건조하는 방식이다.

이 기술은 대량 생산에 적합하며, 건조된 분말의 입자 크기와 밀도를 조절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분무 건조 방식으로 생산된 대표 제품에는 분유, 인스턴트커피, 차, 주스 등이 있다. 액상 식품을 분말 형태로 가공해 보존성과 휴대성이 크게 향상됐다.

● 동결 건조

동결 건조는 농산물을 먼저 냉동한 후 낮은 압력 상태에서 얼음 결정을 직접 기체로 승화시키는 고급 건조 기술이다. 낮은 온도에서 건조하므로 원래의 모양, 색, 영양소 손실이 최소화된다. 동결 건조된 제품의 큰 장점은 재수화가 쉽다는 점이다. 물을 부었을 때 원래 상태로 복원이 잘 되기 때문에, 품질 유지와 사용 편의성 면에서 우수하다.

● 진공 건조

진공 건조는 낮은 기압(760mm Hg) 환경에서 물의 끓는점이 약 44℃로 낮아지는 원리를 이용한 건조 기술이다. 낮은 온도에서도 수분을 증발시킬 수 있어 식품의 구조와 영양소 손상을 최소화하는 데 효과적이다. 진공 건조는 특히 열에 민감한 농산물을 가공하는 데 적합하다. 예를 들어, 채소류를 천연 조미료로 만들거나, 향과 색을 그대로 보존한 허브 건조품을 생산하는 데 활용된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진공 건조는 프리미엄 제품 가공에 자주 사용된다.

● 삼투 건조

삼투 건조는 농산물을 설탕 용액에 침지해 삼투압 작용으로 수분을 제거하는 방식이다. 가열 건조를 함께 적용해 에너지 절감이 가능하며, 특히 열대과일 가공에 자주 활용된다. 삼투 건조는 과일의 갈변 효소를 비활성화해 원래의 색상을 유지하고, 설탕이 과일의 구조를 지지해 형태와 식감을 유지하는 데 효과적이다. 이후 열풍 건조를 통해 미생물 번식이 어려운 수준으로 수분 활성도를 낮춰 최종 제품으로 완성된다. 삼투 건조로 생산된 건조 과일은 에너지 공급이 빠르고 휴대성이 뛰어난 덕분에 외출 시 휴대하는 식품으로 인기가 많다.

앞으로 기대되는 건조 기술

건조 기술은 식품 산업 전반에 걸쳐 새로운 가능성을 열고 있다. 전통적으로 상인이나 선원들의 이동 식량으로 사용되던 말린 과일과 육포는 오늘날 시리얼, 요거트 등 다양한 식품에 활용되고 있으며, 건강 스낵으로 자리 잡았다.

최근에는 과일 가루나 동결 건조 스낵과 같은 제품도 등장하고 있다. 편리함과 건강을 동시에

충족시키며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다양한 건조 방법을 적용한 농산물 가공품은 오늘날 식품 산업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삼투 탈수방식으로 보존처리한 망고의 품목분류 사례를 소개한다.

2. 분류 사례

○ 개요

- 절단한 망고를 당시럽에 삼투 탈수방식으로 보존처리해 건조한 것을 수지제 봉지에 소매포장(내용량 : 45g)

- 용도 : 식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 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결정 세번 및 분류 이유

- 결정 세번 : 제2008.99-9000호

- 분류 이유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일·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특히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중략> … (10) 삼투 탈수방식(osmotic dehydration)으로 보존처리한 과일. ‘삼투 탈수’란 과일 조각을 농축한 설탕 시럽에 장시간 담가 과실의 수분과 자연당(natural sugar) 대부분을 시럽의 설탕으로 대체하는 방식을 말한다. 삼투 탈수 후 수분 함량을 더 줄이기 위해 열풍 건조(air-dried)하기도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본 물품은 망고 과육을 삼투 탈수방식으로 보존처리한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008.99-9000호에 분류했다.

3. 품목분류 적용 길라잡이

부	(제4부) 조제 식료품, 음료·주류·식초 … <후략>
류	(제20류) 채소·과실·견과류나 식물의 그 밖의 부분의 조제품
호	(제2008호)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 … <후략>
HSK	(제2008.99-9000호) 기타 - 기타

4. 품목분류 유의사항

소량의 설탕을 첨가해 건조한 것은 제8류의 건조한 과실로 분류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만, 동남아시아 여행에서 많이 구매해 오는 달고 건조된 과실이 일반적으로 제2008호의 삼투 탈수방식으로 보존처리된 과실임을 알고 즐긴다면 좀 더 흥미로울 것이다.

■ 관세율표 제8류 총설

소량의 설탕을 첨가하는 것은 이 류의 과실로 분류하는 데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류에는 또한 건조과실(예 : 프룬 등)이 포함되며,

… <중략> …

이 류에는 삼투 탈수방식으로 보존처리한 과실은 분류하지 않는다. '삼투 탈수(osmotic dehydration)'란 과실조각을 장시간 농축설탕 시럽에 담가 과실의 수분과 자연당(糖) 대부분을 시럽의 설탕으로 대체하는 방식을 말한다. 삼투 탈수 후 수분 함량을 더 줄이기 위해 열풍 건조하기도 한다. 이러한 과실은 제20류에 분류한다(제2008호).

5. 관련 물품의 품목분류 사례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공개 여부	공개
결정 세번	제2008.99-9000호
품명	Mango preserved by osmotic dehydration; Royal Dried Mango Low Sugar 45g
물품 설명	- 절단한 망고를 당시럽에 삼투 탈수방식으로 보존처리해 건조한 것을 수지제 봉지에 소매 포장(내용량 : 45g) - 용도 : 식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 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관련 이미지



피니싱 세라믹

이 영 주 | 중앙관세분석소

타일은 건축물, 구조물 등의 내벽, 외벽, 바닥의 표면을 보호하고 건축물 자체의 보호와 건축물에 대한 미관을 부여한다. 타일은 내벽용, 외벽용, 바닥용 등 용도에 따라 요구되는 기능과 기준치가 다르다. 원료의 배합, 성형, 소성 등 다양한 방법으로 용도에 적합한 기능과 성능의 타일이 생산되는데, 타일의 흡수율을 예를 들면(KS 규격) 흡수율이 3% 이하면 자기질, 5% 이하는 석기질, 18% 이하는 도기질로 규정된다.

세계 최초의 타일은 이집트의 피라미드에서 발견됐는데 기원전 약 3,000년경 제작된 청색 유약을 입힌 벽면 타일이라고 한다. 타일이 건축에 본격적으로 사용된 것은 기원후 619년 포교가 시작된 이슬람교의 영향이다. 이 무렵 실크로드를 통해 중국의 도기 공예 기술이 전파됐으며 유럽의 각국에도 타일 제조 기술이 흘러 들어갔다. 현재는 한국과 일본뿐 아니라 인도네시아, 대만, 중국 등이 주요 타일 제조국으로 자리 잡았고, 유럽에서는 이탈리아와 스페인이 디자인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세계 타일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관세율표의 제69류는 ‘도자제품’을 분류하는데 도자제품이란 “성형한 후 불에 구워 만든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성형한 후 불에 굽지 않으면 제69류에 분류될 수 없다. 이때, 주의할 점은 섭씨 800℃ 미만의 온도로 가열한 제품의 경우는 소성(燒成)한 것으로 보지 않으며 제69류에서 제외된다.

[세번 정정 이유] 본 물품은 ‘L’자 모양의 적갈색계 타일로 ‘도자제 건축용 벽돌·블록’인 제6904.10-0000호로 신고했다.

제6904호의 건축용 벽돌의 경우 일반적으로 벽·가옥·공업용 굴뚝 등의 건설에 사용하는 여러 가지의 비내화 도자제(즉, 섭씨 1,500℃ 이상의 고온을 견디지 못하는 벽돌) 벽돌을 분류하는데 아래와 같은 형태를 포함한다.

- (1) 보통 직사각형의 단단한 벽돌(표면이 평평하거나 톱니 모양으로 되어 있다)
- (2) 공업용 연돌에 사용하는 곡면 벽돌(때로는 구멍을 낸 것도 있다)
- (3) 중공벽돌(hollow brick)·유공(有孔)벽돌(perforated brick)
- (4) 외장용 벽돌(facing brick)(예 : 가옥이나 벽의 외장용·문이나 창 주위의 외장용에 사용하는 것·기둥 머리·가장자리·띠 모양의 장식벽·그 밖의 건축용으로 사용하는 특수 벽돌도 포함한다)

다만, 해설서에는 벽돌의 형태만 설명하고 있을 뿐 정확한 규격에 대한 설명은 없어 품목분류

를 위해 KS 규격 등을 참조한다. KS 규격의 벽돌과 타일의 규격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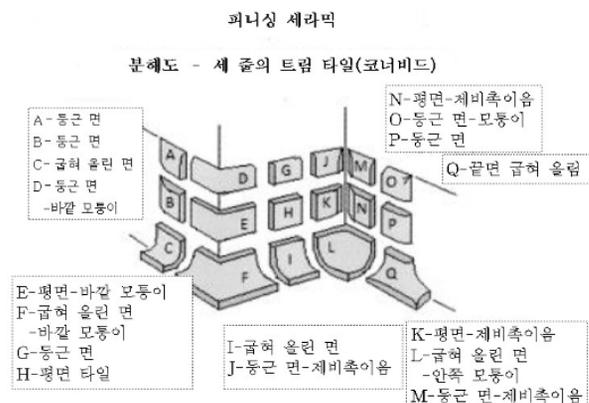
	벽돌	타일
길이(mm)	190 ~ 290	50 ~ 600
너비(mm)	90	50 ~ 600
두께(mm)	48 ~ 57	3 ~ 25

벽돌과 타일의 종류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벽돌의 경우 타일보다 더 두꺼위를 구별점으로 두고 품목분류 하는 경우가 많다.

관세율표 제6907호에는 ‘도자제의 판석과 포장용·노용·벽용 타일, 도자제의 모자이크 큐브와 이와 유사한 것(뒷면을 보강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피니싱 세라믹’이 분류되며, 소호 제6907.40 호에는 ‘피니싱 세라믹’을 분류하고 있다.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판석(flag)과 포장용 타일(paving tile)·노(爐)용 타일(hearth tile)과 벽용 타일(wall tile)은 건축용의 벽돌보다 표면적에 비하여 두께가 얇다. 벽돌은 건축물의 중요한 골격을 형성하여 건설공사상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판석과 타일은 성형한 벽 등의 표면 위에 시멘트·접착제나 그 밖의 방법으로 부착하도록 특별하게 만든 것이다. … <중략> … 이 호의 물품의 분류는 그 구성 재료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모양과 크기에 의하여 결정된다 ; 그러므로 건축용과 포장(鋪裝)용 모두에 사용하기에 적합한 벽돌은 이 호에서 제외한다(제6904 호)”라고 설명하고 있다.

특히, 피니싱 세라믹으로 분류하는 타일의 경우는 몇몇 형태를 해설서에서 제시하며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1) 피니싱 세라믹[예 : 표면작업이나 포장작업 등을 마무리짓기 위한 보조 요소로서 사용하는 경계선 테두름(bordering)용·캐핑(capping)용·걸레받이(skirting)용·프리즈(frieze)용·모서리 작업(angle)용·구석작업용이나 그 밖의 깔기용 타일 조각] : 둥글게 한 모서리가 있는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평평하지 않거나 삼차원의 것으로서, 마무리용 조각으로서의 특성을 부여하는 것이다. 특히, 경계선 테두름(bordering)용·걸레받이(skirting)용·프리즈(frieze)용·구석 작업용·장식을 위한 삽입물용과 그 밖의 도자 부속물용이 그 경우에 해당할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본 물품은 건축 내·외장 마감재(코너용)로 사용되는 것으로 광물성 재료(규산질의 화석 가루나 이와 유사한 규산질의 흙에 해당되지 않음)를 ‘L’자 모양으로 성형 및 소성해 만든 유약처리하지 않은 피니싱 세라믹(수분흡수계수가 10%를 초과)으로 두께와 형태를 볼 때 벽돌에 해당하는 물품이 아니었다.

따라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907.40-9000호에 정정 분류했다.

신고품명	신고세번(세율)	회보품명	정정세번(세율)
BUILDING BRICKS	6904.10-0000 (FCN1 0%)	Finishing ceramics	6907.40-9000 (FCN1 8%)

프랑스, 생수 대신 수돗물 권장

박 현 수 | 관세법인 부일 관세사

작년 11월 프랑스 상원이 수돗물을 더 많이 마시도록 장려하기 위해 생수의 세금을 대폭 올리는 법안을 채택해 화제다. 프랑스 상원 방송 퓌블리크 세나의 관련 보도에 따르면 프랑스 상원은 2025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시중에 판매되는 생수의 부가가치세를 현재 5.5%에서 20%로 대폭 인상하는 안을 채택했다.

인상안을 발의한 라파엘 도베 의원은 “플라스틱 생수의 부가가치세를 인상하는 목적은 소비자가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인 수돗물을 선택하도록 장려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작년 프랑스 생수 제조 판매 관련 회사에서 자사 생수에 수돗물 정화 과정과 유사한 정화 처리를 거쳤다고 인정하면서 큰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상원은 해당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지난 가을 별도 위원회를 출범시키기도 했다.

하지만 정부는 생수 부가가치세 인상안이 저소득층에 큰 부담이 되고 생수 가격이 오르면 소비자가 더 저렴한 음료를 찾게 돼 국민 건강에 해로울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매체는 프랑스정부가 상·하원에서 채택된 안을 무시하고 정부 예산안을 하원 승인 없이 통과시킬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수돗물 불신으로 생수에 의존하는 가정이 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간 중금속과 세균 등이 기준치 이상 검출되거나 구미 정수장 물고기 폐사 사건 등 각종 수질 관련 사고들이 계속 터지면서 국민들의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커진 계기가 됐다.

현행 관세율표에서 수돗물을 포함한 물(Water)은 제2201호 ‘물(천연이나 인조 광천수와 탄산수를 포함하며,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과 얼음과 눈’에 분류된다.

같은 호 해설서에는 “(A) 모든 종류의 천연수(바닷물은 제외한다. 제2501호 참조) : 이 같은 물은 청정한 것이나 순수화한 것인지에 상관없이 이 호에 분류하며, 증류수·전도도수(conductivity water)와 이와 유사한 순수한 물은 제2853호에 분류한다. 이 호는 감미료나 향미를 첨가한 물은 제외한다(제2202호). (B) 천연이나 인조 광천수(mineral water) … <후략>”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논문모집

발행 일정

구분	학술지 발행일	논문 투고 마감일
제1호 (3월)	3월 31일	1월 31일
제2호 (6월)	6월 30일	4월 30일
제3호 (9월)	9월 30일	7월 31일
제4호 (12월)	12월 31일	10월 31일

※ 논문 게재를 원하는 연구자는 각 호별 논문투고 마감일까지 논문 투고

(사)한국관세무역개발원에서는 관세행정 및 무역 정책 수립·발전에 기여할 연구 활동을 장려하고 관세·무역 학술활동 진흥을 도모하고자 학술지 「관세무역연구(Korea Customs Review)」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학술지에 게재할 논문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투고 바랍니다.

※ 본 학술지는 연구 장려를 위해 투고료와 심사료를 받지 않으며, 게재가 확정된 논문에 대해서는 소정의 연구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투고 방법

이메일 승부 (kcr@kctdi.or.kr)

* (사)한국관세무역개발원
홈페이지(www.kctdi.or.kr) 참조

원고 분량

20매 내외

제출 자료

- ① 논문 원고
- ② 논문투고 신청서
- ③ 연구 윤리 확인서

투고 자격

관련 전문가(학계·연구·실무자) 및 대학원생

- ### 논문 주제
- 관세행정 및 제도 관련 연구 분야
(통관, 심사, 조사, 국제협력, 정보데이터 등)
 - 무역 관련 이론·정책 등 연구 분야
(무역실무, 무역이론, 국제경영 등)

연구지원금

편 당 **200만원**
(게재가 확정된 논문에 한함)
* 사사 표기 대상 논문의 경우
지원금의 50% 감액 지급

문의처

연구본부 연구실
Tel 02-3416-5168



주간 관세무역정보 통권 제2115호_2025.1.20.

최신개정법령

입법예고

-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중국 및 대만산 석유수지의 산업피해조사 공청회 개최

본 내용은 www.custracom.com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입법예고

■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 제2025-26호, 2025.1.17.)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전자상거래물품 통관에 있어 간소한 방법으로 적용받으려는 전자상거래업체등에 대한 등록 근거 등 관련 제도를 신설하고, 체납세액의 효율적인 징수를 위하여 과세자료의 제출기관에 가상자산사업자를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가격신고를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는 요건을 같은 판매자와 구매자가 같은 조건으로 반복적으로 수입하는 경우로 완화하고, 가격신고 시 함께 제출해야 하는 과세자료를 구체적으로 열거하도록 가격신고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가격신고 일괄신고 요건 완화 및 가격신고 제출 과세자료 명확화

- 1) 가격신고를 일정기간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는 요건에서 '같은 물품'을 삭제하여 같은 판매자와 구매자가 같은 조건으로 반복적으로 수입하는 경우로 그 요건을 완화함.
- 2) 가격신고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하는 과세자료를 구체적으로 열거함.

나.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제도 개선

- 1) 물품의 거래조건과 거래내용 등 과세가격 결정에 중요한 사항이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대한 사전심사 신청 내용과 달라 관세청장이 사전심사가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반려할 수 있도록 함.
- 2) 특수관계자간 거래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의 유효기간을 결과 통보일로부터 3년이 되는 때의 사업연도 말일까지로 연장함.

다. 관세 중복조사 금지의 예외 사유 추가

- 1) 과세관청 외의 기관이 직무상 목적을 위해 작성하거나 취득해 과세관청에 제공한 자료의 처리를 위해 조사하는 경우를 추가함.
 - 2) 관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를 하는 경우를 추가함.
- 라. 선박용품등의 하역 등을 위한 목적으로 운송수단의 여객·승무원 또는 운전자가 아닌 자가 승선 또는 탑승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자료에 운송차량번호를 포함함.
- 마. 세관장이 제출하게 할 수 있는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의 기산일을 수출신고 수리일에서 원산지 증명서 발급일로 조정함.
- 바. 물품검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관세청장이 엑스선 검색장비 운용 전문인력 및 마약탐지견 등을 양성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 사. 전자상거래업체등 등록절차 마련 등 특별통관 규정 정비
- 1) 전자상거래물품 중 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생략하거나 간소한 방법이 적용될 수 있는 대상을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으로 규정함.
 - 2) 「관세법」에 전자상거래업체 등이 관세청 또는 세관에 등록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등록신청, 등록증 교부, 갱신신청 등의 구체적인 절차와 내용을 규정함.
 - 3) 전자상거래물품의 거래정보 제공 가능 시점을 운송장 번호 생성시점부터에서 주문 또는 배송 결제 완료 시점부터로 확대함.
- 아. 우편물로 수출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등을 수출신고 대상에서 제외함.
- 자. 관세청장이 요청할 수 있는 과세자료에 관세등의 체납이 있는 자의 가상자산거래내역을 추가함.
- 차. 과태료를 경감할 수 있는 사유에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받은 경우를 삭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관세제도과, 전화 (044)215-4411, 팩스 (044)215-8075, 이메일 seonakim@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 전화 044-215-4411
- 전자우편 : seonakim@korea.kr
- 팩스 : 044-215-807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전화 044-215-4411, 팩스 044-215-80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 제2025-25호, 2025.1.17.)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에서 사전심사 대상으로 정한 것은 모두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사전심사제도를 활성화하고, 협정관세 적용 제한자로 지정된 자가 지정의 해제를 신청하는 경우 세관장이 이를 90일 이내에 해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터키'를 '튀르키예'로 국가 명칭을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613호(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
- 전자우편 : ujuwi0510@korea.kr
- 팩스 : 044 - 215 - 807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전화 (044) 215 - 4472, 팩스 044 - 215 - 80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 제2025-28호, 2025.1.17.)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를 최빈개발도상국에서 제외된 국가에 대해서도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최빈개발도상국에서 제외된 국가에 대한 특혜관세 적용기간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국제연합총회의 결의에 따라 최빈개발도상국별 특혜관세 적용시한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최빈개발도상국에서 제외된 국가에 대한 특혜관세 적용을 위해 법률에서 위임한 적용기간 등을 규정함.
- 나. 국제연합총회의 결의에 따라 최빈개발도상국 제외가 예정되어 있는 캄보디아 및 세네갈에 대한 특혜관세 적용시한 등을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아래 참조)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관세협력과 (다자관세팀)
- 전화 : 044-215-4461

- 전자우편 : bigus@korea.kr

- 팩스 : 044-215-807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관세협력과(전화 044-215-4461, 팩스 044-215-80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 제2025-19호, 2025.1.17.)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외국항행선박 또는 원양어업선박에 사용하는 면세석유류의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용도 증명 등을 위한 제출 서류에 해당 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증빙하는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고,

조건부 면세물품 중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의 경우에는 용도 변경 시 관할 세무서장 뿐만 아니라 세관장에게도 신고·납부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세정 집행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환경에너지세제과, 전화 (044)215-4337, 팩스 (044)215-8069, 이메일 onechic7@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 전자우편 : onechic7@korea.kr

- 팩스 : 044 - 215 - 806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전화 044-215-4337, 팩스 044-215-80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24-16호, 2024. 4. 1.)를 아래와 같이 일부 개정하고자 하오니,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5. 2. 4.(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규칙명

-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24-16호, '24.4.1.)

2. 개정사유

- 효율적인 인증수출자 관리를 위해 한국원산지정보원이 수행하는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등의 지원을 위한 업무 범위 추가

3. 주요 개정내용

- 「관세법」 제233조의2에 규정된 한국원산지정보원의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범위 추가(§3의2①)
 -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심사 시 현지확인 지원업무
 - 원산지인증수출자 사후관리 지원업무
-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개정(24.7.2) 및 「관세청장 권한의 위임 및 운영에 관한 훈령」개정 예정(24.12.31)에 따른 고시 정비
 - 직제 개편 및 관세청장이 조정 시행하는 기능별 관할세관 일부 수정에 따른 인증수출자 인증신청 관할세관 정비(별표 1)
 - 대산지원센터의 관할구역의 인증신청 관할세관을 서울세관에서 평택세관으로 변경(직제 개편)
 - 천안세관, 청주세관, 대전세관의 관할구역의 인증신청 관할세관을 서울세관에서 평택세관으로 변경(기능별 관할세관 조정)

4. 규제대상 여부 : “해당 없음”

5. 시행일자 : 2025. 2. 00.

6. 의견제출 방법

- 제출기한 : 2025. 2. 4.까지(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과)
- 담당자 : 백종철사무관(042-481-7968), 권영미주무관(042-481-3234)
- 제출방법 : 이메일(kym626@korea.kr)

■ 중국 및 대만산 석유수지의 산업피해조사 공청회 개최

(무역위원회공고 제2025-21호, 2025.1.17.)

중국 및 대만산 석유수지의 산업피해조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공청회를 개최함을 공고합니다.

1. 일시 : 2025. 3. 20.(목) 14:00~15:30

2. 장소 : 산업통상자원부 13-1동 551호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 사정에 따라 시간 및 장소는 변경될 수 있음

3. 참석대상자 : 국내생산자·국내수입자·국내수요자·외국수출자의 대표자 및 대리인, 관련단체 대표자, 관련부처 관계자 및 수출국 정부 관계자 등

4. 참가신청

가. 공청회에 참가하고자 하는 이해관계인은 2025. 2. 11.(화)까지 이해관계인이라는 소명자료와 진술할 발언요지 및 인적사항(참고인 또는 증인포함)을 첨부하여 무역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함.

* 이해관계인 여부, 수용가능인원 등을 고려하여 참가 승인이 제한될 수 있음

나. 공청회에는 이해관계인 본인(대표자)이 참석함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리인이 대신 참석하여 진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임장과 불참사유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 등을 공청회 개최 5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함.

5. 진술서 발언요지 제출

가. 공청회 시 진술할 발언요지는 한글로 작성(A4종 10매 이내)하여 3부를 제출(문서파일 포함)하되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단, 영업상 비밀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비공개본과 별도로 요약본 및 공개본을 첨부하여야 함.

나. 공청회 참가자는 공청회 개최 시 진술한 사항 중 미진한 부분 등에 대한 추가자료를 공청회 개최 후 7일 이내에 무역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면 제출방식은 “가”항을 준용함.

6. 한국어 및 한글 사용

공청회에 참가하여 진술하는 경우에는 한국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외국인이 직접 참가하는 경우에는 통역을 통하여 진술할 수 있음. 또한 제출하는 자료 중 외국어로 된 자료는 한글로 번역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7. 이해관계인 제출자료의 열람

무역위원회에 제출된 자료는 영업상 비밀사항이 아닌 자료에 한하여 이해관계인이 열람사유 및 요청자료목록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신청한 경우에 열람할 수 있음.

8. 공청회 참가신청 및 진술요지 제출처

- 우편번호 : 30118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산업피해조사과
- 전화 : (044) 203 - 5864, FAX : (044) 203 - 4815
- 전자우편 : nkw0914@korea.kr(진술서 비공개본 및 공개본 등 제출)

한국관세무역개발원 발간 도서



2024 HS 품목별 수출입통관편람

수출입 통관 업무의 백과사전

세율 및 개정 고시 반영, WTO1가 수록기준 변경, 간이징액환급률표 등 수록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엮음 | 상·하권 p.4,984 | 120,000원



2024 관세법령집

관세/무역 관련 법령 총 망라!

2024년 4월 1일 기준 개정 법령 수록, 관련 고시까지 한 눈에 확인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엮음 | p.1,728 | 60,000원



무역금융범죄의 사이클

무역금융범죄 139개 유형 심층분석

이호능·천홍욱·황인욱 공저 | p.590 | 40,000원



2023 관세환급실무

관세환급 실무중심 사례 소개

윤철수·이상학 공저 | p.603 | 50,000원



2023 관세형사법

관세무역 적법절차 준수 지침서

박영기·조재웅 공저 | p.896 | 60,000원

온라인 도서 구매 10% 할인

구매문의 02)3416-5112

온라인 구매 smartstore.naver.com/kctdi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도서 판매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전문도서관

전자도서서비스

— 2024년 12월 오픈! —

이용방법

도서관 홈페이지 library.kctdi.or.kr



모바일 앱 서비스 지원
(구글 및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관세/무역 자료 원문 열람



개발원 발행 자료의
창간호 ~ 최신호까지!

한국관세무역개발원 발행 자료 포함,

도서관 소장 2,500여건의 원문자료 제공!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이용 가능!



한국관세무역개발원
Korea Customs and Trade Development Institute